

마약류사범 보호관찰 확대 등 사후관리 방안 연구

Effective Treatment for Drug Offenders on Probation

전영실·김지영

발간사

우리나라의 마약류사범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증가추세와 더불어 높은 재범율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약류사범의 최근 5년간 재범율을 보면 30%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마약류사범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의 경우 최근 5년간 재범율이 40%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약류사범의 재범율을 고려한다면 재범예방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마약류사범 중에서는 투약사범의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투약사범의 경우 처벌과 더불어 효과적인 관리감독 및 치료 등의 방안이 병행되어야 재범율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형을 유예하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할 경우 단순히 유예처분만을 할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관리감독 등을 병행하여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즉, 마약류사범을 대상으로 약물사용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개인적 요인이나 가족관계, 주변의 유해한 환경점검 및 차단, 사회경제적 지원 등 다방면에 걸친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형의 유예처분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약류사범의 특성을 고려한 사후관리는 재범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마약류사범에 대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처분시 부가되는 처분에 대한 분석 및 이를 토대로 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형의 유예처분을 받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마약류범죄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판결문 분석을 통하여 마약류사범의 특성 및 이들에 대한 처분 특성에 대해 파악해 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형의 유예처분을 받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등의 운영현황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형의 유예 처분을 받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 연구가 형의 유예처분을 받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마약류사범의 재범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연구를 맡아 진행하여 준 전영실, 김지영 박사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2017년 11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김진환**

목 차

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 전영실	3
제1절 연구목적	5
제2절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7
1. 연구대상	7
2. 연구방법	10
가. 판결문 조사	10
나. 실무가 자문	10
 제2장 마약류사범의 특성 및 처우관련 논의 · 전영실	13
제1절 마약류사범의 특성 및 범죄관련 요인	15
제2절 마약류사범의 처우관련 논의	19
 제3장 집행유예를 받은 마약류사범의 특성 및 처분 · 김지영	25
제1절 집행유예를 받은 투약사범의 특성	27
1. 사회인구학적 특성	27
가. 국적	27
나. 성별	27
다. 연령	28
라. 직업	28
마. 거주지	30

2. 사건특성	31
가. 죄명	31
나. 범죄유형	32
다. 이종경합범죄 유무	32
라. 공범유무 및 공범간의 관계	33
마. 마약류 종류	34
바. 마약류 획득경로	35
사. 반성여부	35
아. 자수여부	36
자. 조직범죄구성원 여부	37
3. 범죄경력 및 처분특성	37
가. 범죄경력	37
나. 처분	38
다. 변호사 선임여부	40
제2절 보호관찰을 받은 투약사범의 특성	40
1. 사회인구학적 특성	40
가. 국적	40
나. 성별	41
다. 연령	42
라. 직업	42
마. 거주지	44
2. 사건특성	45
가. 죄명	45
나. 범죄유형	46
다. 이종경합범죄 유무	47
라. 공범유무 및 공범간의 관계	47
마. 마약류 종류	48
바. 마약류 획득경로	48
사. 자수여부	50
아. 조직범죄 구성원여부	50
3. 투약특성	51
가. 마약구매가격	51
나. 투약량	51

- 다. 투약횟수 52
- 라. 투약간격 53
- 마. 투약기간 54
- 바. 투약장소 55
- 사. 투약방법 55
- 4. 범죄경력 및 처분특성 57
 - 가. 범죄경력 57
 - 나. 처분 58
 - 다. 변호사선임 여부 59
- 제3절 소결 60

Ⅱ 제4장 | 마약류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등 부가처분

운영현황 · 전영실 61

- 제1절 형의 유예처분시 부과되는 보호관찰 등의 성격 63
- 제2절 마약류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등 운영실태 66
 - 1. 일반적인 절차 및 운영 66
 - 2. 마약류사범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관찰 등 운영실태 67
 - 가. 마약류전담 보호관찰제 운영 67
 - 나. 마약류사범에 대한 약물검사 실시 69
 - 다. 외부전문가 연계 상담 실시 70
 - 라. 마약류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소 자체 프로그램 운영 72
 - 마. 형의 유예시 보호관찰 등 부과에 대한 평가 73

Ⅲ 제5장 | 형의 유예처분을 받은 마약류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관리방안 · 전영실 77

- 제1절 형의 유예처분시 보호관찰 확대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79

제2절 형의 유예시 부과되는 보호관찰 등의 개선방안	82
참고문헌	87
Abstract	91
부록	93

표 차례

〈표 1-1〉 마약류별 1심 재판결과	8
〈표 1-2〉 마약류별 실행 및 집행유예 선고별 비율	9
〈표 3-1〉 투약자의 국적	27
〈표 3-2〉 투약자의 성별	28
〈표 3-3〉 투약자의 연령	29
〈표 3-4〉 투약자의 사건당시 직업	29
〈표 3-5〉 투약자의 거주지	30
〈표 3-6〉 투약자의 거주지역특성	31
〈표 3-7〉 투약자의 죄명(복수응답)	32
〈표 3-8〉 투약자의 범죄유형(복수응답)	32
〈표 3-9〉 투약자의 이중경합범죄 유무	33
〈표 3-10〉 투약자의 공범유무	33
〈표 3-11〉 공범자들간 관계(복수응답)	34
〈표 3-12〉 투약자의 마약류 종류(복수응답)	35
〈표 3-13〉 투약자의 범죄에 대한 반성 여부	36
〈표 3-14〉 투약자의 마약류 획득 경로(복수응답)	36
〈표 3-15〉 투약자의 자수 여부	37
〈표 3-16〉 조직범죄 구성원 여부	37
〈표 3-17〉 투약자의 범죄경력(복수응답)	38
〈표 3-18〉 투약자의 집행유예 기간	39
〈표 3-19〉 투약자의 부가처분(복수응답)	39
〈표 3-20〉 투약자의 변호사 선임 여부	40
〈표 3-21〉 보호관찰 투약자의 국적	41
〈표 3-22〉 보호관찰 투약자의 성별	41
〈표 3-23〉 보호관찰 투약자의 연령	42
〈표 3-24〉 보호관찰 투약자의 사건당시 직업	43
〈표 3-25〉 보호관찰 투약자의 거주지	44
〈표 3-26〉 보호관찰 투약자의 거주지역 특성	45
〈표 3-27〉 보호관찰 투약자의 범죄유형(복수응답)	46
〈표 3-28〉 보호관찰 투약자의 죄명(복수응답)	46
〈표 3-29〉 보호관찰 투약자의 이중경합범죄 유무	47

〈표 3-30〉 보호관찰 투약자의 공범 유무	48
〈표 3-31〉 보호관찰 투약자의 마약류 종류(복수응답)	49
〈표 3-32〉 보호관찰 투약자의 마약류 획득경로(복수응답)	49
〈표 3-33〉 보호관찰 투약자의 자수여부	50
〈표 3-34〉 보호관찰 투약자의 조직범죄 구성원 여부	50
〈표 3-35〉 보호관찰 투약자의 마약 총구매가격	51
〈표 3-36〉 보호관찰 투약자의 투약량(g)	52
〈표 3-37〉 보호관찰 투약자의 투약횟수	53
〈표 3-38〉 보호관찰 투약자의 투약간격	54
〈표 3-39〉 보호관찰 투약자의 투약기간	55
〈표 3-40〉 보호관찰 투약자의 범죄경력(복수응답)	56
〈표 3-41〉 보호관찰 투약자의 투약장소(복수응답)	56
〈표 3-42〉 보호관찰 투약자의 투약방법(복수응답)	57
〈표 3-43〉 보호관찰 투약자의 집행유예 기간	57
〈표 3-44〉 보호관찰 투약자의 부가처분(복수응답)	58
〈표 3-45〉 보호관찰 투약자의 변호사 선임 여부	59

국문요약

이 연구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형의 유예처분시 부가처분 등 사후관리 현황 분석 및 효과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먼저 이 연구에서는 2016년도 1년간 마약류범죄로 집행유예처분(1심 기준)을 받은 사건을 대상으로 판결문조사를 하였다(총 1,856건).

판결문조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투약사범은 비투약사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낮고, 자영업자의 비율이 약간 높다. 범죄관련 사항에서 사용약물을 보면 대마를 사용한 비율이 높고, 비투약사범에 비해 매수범죄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중경합범죄 비율은 적고, 공범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마약투약이 중독성을 가지는 특성상 동종전과자의 비율이 비투약사범에 비해 높았으며 보호관찰과 수감명령을 부가받은 비율도 높았다. 그러나 투약사범들은 비투약사범에 비해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낮았다. 본 조사의 분석대상이 된 투약사범중에 보호관찰을 부가받은 사람은 약 60%인데 보호관찰을 부가받은 집단과 부가받지 않은 집단을 비교·분석하여 얼마나 적절한 처분이 내려졌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보호관찰선고집단의 90%가 내국인인데 반해, 비선고집단은 67%만이 내국인이었다. 이는 외국인의 경우, 추방 등의 처분으로 인해 보호관찰이 부가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집단은 비선고 집단에 비해 연령대는 높으며 자영업자와 판매·서비스직의 비율이 약간 높았고 상대적으로 부산과 인천 등 대도시 거주자가 많았다. 투약사범전체에서는 대마사범의 비율이 높았으나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집단에서는 향정사범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이중경합범죄의 비율은 낮으며 단독범인 경우가 많았다. 보호관찰 선고자의 절반 가까이가 불법약물거래업자로부터 마약을 취득하였는데 비선고집단에 비해 투약량은 적으나 투약횟수는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용량과 횟수가 처분과 뚜렷한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투약방법에서는 주사기로 투약한 사범에 대해 보호관찰이 부가된 비율이 매우 높았다. 보호관찰 선고집단은 비선고집단에 비해 동종전과자의 비율이 약간 높아 이 점에서는 처분이 적절하게 내려진 것으로 보이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도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마약류사범 보호관찰 확대 등 사후관리 방안 연구

다음으로 마약류사범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관찰 운영실태를 보면, 마약류사범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보호관찰 절차와 운영을 따르고 있다. 이와 동시에 마약류사범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마약류전담 보호관찰제 운영, 약물검사 실시, 외부전문가 연계상담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판결문조사와 보호관찰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마약류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형의 유예처분시 보호관찰 확대를 통한 사후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형의 유예처분을 받는 경우 부과되는 보호관찰이 약물검사, 생활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마약류사범의 재범예방에 유용할 수 있다는 점과 조기개입을 통해 더 심각한 약물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형의 유예시 부과되는 보호관찰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면, 첫째, 마약류종류나 행위유형을 고려한 사후관리, 둘째, 현장출장 강화, 셋째, 약물검사 전담직원 확보 및 보호관찰소 자체적으로 다양한 약물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약물검사 실시, 넷째, 마약류전담 보호관찰관의 인력확충 및 전문화, 다섯째,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강화, 여섯째, 수강명령과 관련해서는 마약류사범의 약물종류 등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약물을 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이외의 중간적인 다양한 제재방안 마련을 들 수 있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1장

서론

전영실

서론

제1절 연구목적

공식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마약류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의 추세를 보면 2012년 9,255명에서 2016년에는 14,214명에 이르고 있다(대검찰청, 2017: 103). 이렇듯 마약류사범의 증가추세와 더불어 높은 재범율도 문제가 되고 있다. 마약류사범의 경우 최근 5년간 재범율을 보면, 30%대 후반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6년의 경우 37.2%에 이르고 있다. 특히 마약류사범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향정사범의 경우 최근 5년간 재범율은 40%대를 나타내고 있다(대검찰청, 2017: 204). 마약류사범의 재범 중 동종 마약류 재범율은 2016년의 경우 78.8%였으며, 향정사범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82.0%에 달한다(대검찰청, 2017: 205). 이러한 추세를 고려한다면 마약류사범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할 수 있다. 특히 마약류사범 중 투약사범의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으며¹⁾, 투약사범의 경우 처벌과 더불어 효과적인 관리감독 및 치료 등의 방안이 병행되어야 재범율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형을 유예하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할 경우 단순히 유예처분만을 할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관리감독 등을 병행하여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²⁾

1) 2016년의 경우 마약류사범 중 투약사범의 비율은 51.6%에 이르고 있다(대검찰청, 2017: 105).

2) 우리나라 형법에는 집행유예처분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선고유예처분시에는 보호관찰). 이에 대한 내용은 제2장에서 자세히 소개하였다.

한편, 마약류사범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으로 사회내 처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내 처우의 경우 범죄자에 대한 처벌위주가 아닌 사회적 치료를 함께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 등이 유용할 수 있다고 논의된다(박성수, 2010: 213).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치료와 감시가 약물범죄자의 재범예방에 효과적인지를 파악한 경험적 연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받은 약물범죄

6 마약류사범 보호관찰 확대 등 사후관리 방안 연구

마약류사범의 1심 재판 결과를 보면, 선고유예는 별로 없으나, 집행유예의 비율은 실행 다음으로 높으며, 최근 5년간 30%대를 보이고 있다.³⁾ 또한 집행유예의 경우 평균 형기는 최근 5년간 26-32개월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대검찰청, 2017: 199). 이렇듯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관리감독 등이 병행될 경우 재범방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약류사범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투약사범의 경우 범죄자이면서 동시에 마약류사용과 관련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사범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집행유예처분보다는 보호관찰처분 등 사후관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즉, 마약류사범을 대상으로 개인적 요인이나 가족관계, 주변의 유해한 환경점검 및 차단, 사회경제적 지원 등 다방면에 걸친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집행유예처분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마약류사범의 특성을 고려한 사후관리는 재범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마약류사범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에 부가되는 처분에 대한 분석 및 이를 토대로 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연구에서는 첫째, 마약류사범의 특성 및 재범관련 요인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마약류사범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사후관리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둘째, 마약류범죄로 집행유예처분이 된 사건에 대한 판결문 분석을 토대로 집행유예처분을 받는 마약류사범의 특성 및 이들에 대한 처분의 특성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특히 투약사범을 중심으로 보호관찰 부과여부에 따라서 마약류 범죄자나 범죄행위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⁴⁾ 셋째, 마약류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운영현황 등 사후관리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형의 유예처분을 받는 경우 마약류사범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

자의 재범까지 걸린 기간이 가장 길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Banks and Gottfredson, 2003). 이는 약물범죄자에게 있어 감시, 치료는 재범억제 요인이 되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3) 이에 대한 자세한 수치는 <표1-1>참조.

4) 이 연구에서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처분을 받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확대 등 사후관리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선고유예를 받는 인원이 매년 10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집행유예처분을 받는 마약류사범을 중심으로 부가처분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대검찰청, 2017: 195-196). 다만 형의 유예시 부가되는 보호관찰 등 효과적인 사후관리 방안 제시에서는 선고유예시의 경우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다.

인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형의 유예처분시 부가처분 등 사후관리 현황분석 및 효과적인 사후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여기서는 집행유예처분에 초점을 맞추어 집행유예처분을 받는 마약류사범의 특성 및 집행유예처분시 부가처분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참고로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의 1심 재판결과를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표 1-1 참조). 마약사범의 경우 집행유예의 비율이 대체로 40%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형의 비율은 주로 20%대를 차지하고 있고, 벌금형의 비율은 10%대 후반에서 20%대에 이르고 있다. 마약류사범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향정사범의 경우를 보면, 최근 5년간 실형의 비율이 60%대 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유예의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대체로 30%대 초반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벌금형의 경우는 2-3%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사범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집행유예의 비율이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에 이르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세 종류의 마약사범 중 집행유예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대마사범의 1심 재판결과가 실형인 비율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이르고 있지만, 최근 실형의 비율이 조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벌금형의 비율은 대체로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사범 전체를 대상으로 보면, 최근 5년간 실형의 비율은 50%대 후반을 보이고 있으며, 집행유예의 비율은 30%대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벌금형의 비율은 연도에 관계없이 5% 미만에 머물고 있다.

이상에서 마약류사범에 대한 1심 재판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마약류사범의 집행유예 비율은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마약류사범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향정사범의 집행유예 비율과 비슷한 것이다. 여기서의 결과를 보면, 마약류사범 중 집행유예를

8 마약류사범 보호관찰 확대 등 사후관리 방안 연구

〈표 1-1〉 마약류별 1심 재판결과

단위: 명, %

구분	벌금		집행유예		실형		기타		전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마약	2012	10	25.0	19	47.5	9	22.5	2	5.0	40	100.0
	2013	6	20.0	13	43.3	8	26.6	3	10.0	30	100.0
	2014	11	22.4	20	40.8	14	28.6	4	8.2	49	100.0
	2015	8	18.6	13	30.2	14	32.6	8	18.6	43	100.0
	2016	11	19.3	25	43.9	14	24.5	7	12.3	57	100.0
향정	2012	92	3.3	822	29.3	1,752	62.4	140	5.0	2,806	100.0
	2013	110	3.8	934	32.1	1,759	60.4	107	3.7	2,910	100.0
	2014	103	3.5	920	31.2	1,813	61.5	116	3.9	2,952	100.0
	2015	96	2.9	1,064	32.4	2,023	61.5	105	3.2	3,288	100.0
	2016	95	2.3	1,356	32.5	2,619	62.8	100	2.4	4,170	100.0
대마	2012	31	7.9	282	71.8	74	18.8	6	1.5	393	100.0
	2013	44	10.6	291	69.8	72	17.3	10	2.4	417	100.0
	2014	29	8.0	269	73.9	55	15.1	11	3.0	364	100.0
	2015	27	7.4	254	69.8	76	20.9	7	1.9	364	100.0
	2016	29	7.6	258	67.6	89	23.2	6	1.6	382	100.0
전체	2012	133	4.1	1,123	34.7	1,835	56.6	148	4.6	3,239	100.0
	2013	160	4.8	1,238	36.9	1,839	54.8	120	3.6	3,357	100.0
	2014	143	4.2	1,209	35.9	1,882	55.9	131	3.9	3,365	100.0
	2015	131	3.5	1,331	36.0	2,113	57.3	120	3.2	3,695	100.0
	2016	135	2.9	1,639	35.5	2,722	59.1	113	2.5	4,609	100.0

※ 연도별 선고일 기준 통계임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2015, 200; 2017, 191)

받는 비율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들에게 시설내 처우가 아닌 집행유예처분을 내릴 경우에는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재범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약류사범의 1심 재판결과에 이어서 마약류사범의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2 참조). 마약류 종류에 관계없이 선고유예가 되는

〈표 1-2〉 마약류별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별 비율

단위: 명, %

구분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		기타		전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마약	2012	2	3.6	22	40.0	23	41.8	8	14.5	55	100.0
	2013	2	3.4	24	40.7	26	44.1	7	11.9	59	100.0
	2014	1	1.4	32	45.7	24	34.3	13	18.6	70	100.0
	2015	2	2.7	29	39.2	32	43.2	11	14.9	74	100.0
	2016	3	3.5	28	33.0	39	45.9	15	17.6	85	100.0
향정	2012	0	0.0	879	32.0	1,718	62.6	147	5.4	2,744	100.0
	2013	0	0.0	840	33.4	1,537	61.1	138	5.5	2,515	100.0
	2014	0	0.0	859	32.6	1,633	62.1	139	5.3	2,631	100.0
	2015	0	0.0	1,062	32.5	2,073	63.5	131	4.0	3,266	100.0
	2016	1	0.0	1,057	33.7	1,991	63.4	91	2.9	3,140	100.0
대마	2012	0	0.0	328	57.2	206	36.0	39	6.8	573	100.0
	2013	0	0.0	321	58.5	194	35.3	34	6.2	549	100.0
	2014	1	0.2	334	57.6	208	35.9	37	6.4	580	100.0
	2015	1	0.2	297	47.4	293	46.8	35	5.6	626	100.0
	2016	0	0.0	281	51.4	242	44.2	24	4.4	547	100.0
전체	2012	2	0.1	1,229	36.4	1,947	57.7	194	5.8	3,372	100.0
	2013	2	0.1	1,185	37.9	1,757	56.3	179	5.7	3,123	100.0
	2014	2	0.1	1,225	37.3	1,865	56.8	189	5.8	3,281	100.0
	2015	3	0.1	1,388	35.0	2,398	60.5	177	4.5	3,966	100.0
	2016	4	0.1	1,366	36.2	2,272	60.2	130	3.4	3,772	10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2017, 195-196)

경우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마약류사범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향정사범의 경우 최근 5년간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1명뿐이었으며, 대마사범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 2명만 선고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을 볼 때 마약류사범 중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매년 5명 미만인 것을 알 수 있다. 집행유예의 비율은 대마사범의 경우 대체로 50%대를 차지해서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반면 향정사범의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비율이 30%대 초반으로 가장 낮은 편이었다. 전체적으로 마약류사범 중 집행유예를 받는 비율은 30%대 후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1,000명대의 인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행의 비율은 향정사범의 경우 60%대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고유예의 경우 실제 선고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형의 유예시 사후관리방안 연구는 집행유예를 중심으로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가. 판결문조사

이 연구에서는 2016년도 1년간 마약류범죄로 집행유예처분(1심 기준)을 받은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1심을 기준으로 판결문은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제공받았다. 판결문조사를 통하여 집행유예처분을 받는 마약류사범의 특성 및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이 부과되는 마약류사범의 특성과 범죄특성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⁵⁾ 본 조사에 앞서 2017년 8월 17일 대검찰청 마약과를 방문, 판결문 20건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거쳐 조사표 일부내용을 수정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총 1856건의 판결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⁶⁾ 경찰행정학과 범죄심리학을 전공한 석사 이상의 연구보조원 9인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조사에 투입하였다. 조사는 2017년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7일간 실시되었다.

나. 실무자 자문

마약류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등 부가처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하여 법무부 특정범죄자 관리과와 보호관찰과 실무자 및 일선에서 마약류사범을

5) 판결문조사표 중 일부 항목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7년도 연구보고서인 “신종마약류 범죄 발생실태와 통계정책”(전영실외, 2017년 12월 발간예정)부록 수사재판기록조사표를 사용하거나 수정한 것이 포함되었다.

6) 2016년 집행유예 사건에서 앞의 공식통계와 본 조사대상 건수의 차이는 전자의 경우 사건접수일 기준이며, 본 조사의 경우 대검찰청 마약과로부터 2016년 1년간 선고된 것을 기준으로 판결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담당하는 보호관찰 실무가를 대상으로 자문을 받았다. 특정범죄자 관리과 자문(2명)과 마약류사범에 대한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 경험이 있는 보호관찰과 실무가(1명) 자문에 이어서 일선 실무가 자문은 마약류 범죄가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대도시 3개 지역(서울, 부산, 인천) 보호관찰소 실무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7명)⁷⁾. 보호관찰 실무자를 대상으로 보호관찰대상 마약류사범의 특징, 마약류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운영현황 및 장단점, 보완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7) 뒤의 보고서에서는 실무자 개개인으로 표시하지 않고 각 기관별로만 표시하였다.

마약류사범의 특성 및 처우관련 논의

전영실

마약류사범의 특성 및 처우관련 논의

제1절 마약류사범의 특성 및 범죄관련 요인

여기서는 마약류사범의 특성 및 마약류범죄 관련 요인을 다룬 경험적 연구들을 통하여 마약류사범에 대한 사후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마약류사범의 특성을 보여준 연구로 한부식과 황인옥(2017)은 서울과 부산에서 약물자조모임을 하면서 만난 약물남용대상자 대상자 7명(전원 필로폰투약 경험있음)을 조사하였는데, 이들의 경제적 수준은 중하층에 해당하며,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었다. 이들은 사회적 낙인과 근로의욕감퇴 등으로 다시 약물을 하게 되는 등의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부식·황인옥, 2017: 109). 김남희와 서정민(2012)은 치료보호기관 1개와 보호관찰소, 교도소 각각 5곳에서 마약류사범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하여 약물중독과 알콜의존이 없는 마약류사범의 대부분(92.4%)은 정신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특히 약물중독이 있는 경우에는 절반 가까이가 정신건강 영역(불안, 강박증, 대인예민성 등) 중 1개 이상에서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약류사범 중 약물중독자에 대해서는 특히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마약류사범 중 보호관찰대상자의 특성을 보여준 연구도 있다. 김은경(2006)은 마약류사용사범 중에서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 교도소시설 구금을 받고 있는 집단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보호관찰대상자 중 약물중독위험이 높은 비율은 18.5%였으며 약물중독위험이 낮은 비율은 81.5%였다. 참고로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와 시설에 구금된 집단에서 약물중독위험이 높은 비율은 각각 76.9%, 63.8%였다(김은경, 2006: 318). 이는 최근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보호관찰

을 받는 마약류사범의 경우 약물중독이 된 사람이 많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약물중독에 대한 치료보다는 이후 재범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감독이 보다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마약류사범의 특성에 이어서 마약류범죄의 관련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약류범죄, 특히 마약류 사용에 대해 관련요인을 다루는 연구들은 주로 약물사용의 동기, 재범관련 요인을 파악하고 있다.

신현주와 박성수(2015)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약물남용의 원인을 살펴 본 결과 호기심이 가장 많으며, 친구나 선후배의 권유 순인 것을 보여 주었다(신현주·박성수, 2015: 195). 또한 윤민우(2012)는 성인약물남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부정적 자아감이 마약류사용과 관련됨을 보여 주었다.

박성수(2010)는 마약류범죄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 87명을 대상으로 약물사용 동기와 재범가능성과 관련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약물사용동기로 호기심이 가장 많으며(72.4%), 다음은 스트레스 해소(13.8%), 주위의 권유나 강압(11.5%) 등의 순이었다(박성수, 2012: 221). 또한 생활주거환경이 열악할수록, 가구 월 소득이 낮을수록, 음주, 도박 등의 문제가 있을수록 재범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성수, 2012: 224-225). 이는 마약류사범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물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 문제나 경제적 상황, 주변 환경 등 포괄적인 요인들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또한 박성수와 김우준(2010)은 진주교도소에서 마약류관련 범죄로 수용된 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박성수·김우준, 2010: 352).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자 입장에서 마약류사용 중단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가족, 친구 등 주변의 관심과 지원', '재취업, 사회적 적응 등 사회적 배려와 지지'가 각각 26.1%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자신의 의지가 21.7%, 주변의 유혹이나 강압 해소가 15.2% 등으로 나타났다(박성수·김우준, 2010: 355). 이러한 결과는 주변 가까운 사람의 관심과 지원이나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며,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또한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마약류 중단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박성수·김우준, 2010: 356). 이러한 측면에서 보호관찰 등 사후관리는 마약류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 적절한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마약류범죄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약류범죄와 관련해서 가족의 중요성은 외국의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Hutto 등(2016)은 미국 텍사스에서 보호관찰을 받는 여성을 대상으로 약물사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가족구성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생활환경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유용한 것임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약물 재범에는 만성통증이 관련됨을 보여 준 연구도 있다. Gonzalez 등(2015)은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성인 25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만성통증을 앓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약물관련 검거가 더 많이 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만성통증을 다루는 것이 불법적 약물사용의 감소, 보호관찰위반, 약물관련 검거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질병 치료도 약물범죄의 재범예방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요소임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마약류사범의 재범관련 요인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더불어 범죄경력,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하여 다루는 연구들도 있다. 김은경(2006)의 연구에서는 약물사범의 재범(약물과 관련된 형사처벌 횟수)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약물이외의 범죄경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총 변량의 48%를 설명), 다음으로 주거이전횟수가 많을수록, 중독자로서의 정체성이 강할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약물사용의 재범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은경, 2006: 328-330). 이러한 결과는 다른 범죄자들과 마찬가지로 마약류 사용의 경우에도 범죄경력이 이후 재범가능성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주거이전 횟수가 많을수록 생활이 불안정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외국의 연구로 Devall 등(2017)은 미국 미드웨스트 교외도시에 있는 약물치료 법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인 남자 249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약물프로그램 종료와 재범율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다 젊은 수록, 실업상태인 경우, 낮은 교육수준, 프로그램 이전 경범죄 유죄판결횟수 등이 프로그램의 비성공적인 종료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에 5달 미만으로 참여한 경우, 알콜,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이외의 약물을 보고한 경우, 보호관찰위반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경우, 프로그램진입시 보다 젊은 연령층인 경우,

프로그램 이전에 중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많을수록 5년 후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약물범죄자의 취업을 알선하는 것, 교육적 성취를 돕는 것이 프로그램 종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기간(5개월 이상)이 프로그램 후 재범율을 낮추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Devall et al., 2017: 96). Listwan 등(2009)도 약물법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메스암페타민과 다른 약물사용자를 대상으로 재범관련 요인 및 프로그램 종료에 관련되는 요인을 살펴보았는데,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약물관련범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검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Listwan et al., 2009: 638). 또한 교육수준과 고용상태가 프로그램 종료와 관련되었다. 즉,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실업자인 경우 프로그램을 마치는 경우가 더 적었다(Listwan et al., 2009: 639). Evans 등(2011)의 연구에서도 약물을 사용하는 범죄자의 재검거와 관련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고위험범죄자(본 범죄 이전 5년 동안 유죄판결을 5번 이상 받은 사람) 여부 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 고용상태,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서비스를 많이 받을수록 재범감소)이 약물 범죄자의 재검거와 관련됨을 보여주었다. Larney와 Martire(2010)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약물남용자를 위한 다이버전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재범관련 요인을 살펴본 결과 범죄경력이 재범과 관련되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범죄경력과 더불어 대마 이외의 주요 약물(즉, 메스암페타민, 헤로인 사용)이 재범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높은 연령, 다이버전 프로그램 종료 등은 재범에 대항하는 보호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재범관련 요인 파악이 강도 높게 개입해야 할 대상을 선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Brecht와 Herbeck(2014)은 대규모 군 약물 치료체계에 들어온 메스암페타민 사용자 중 무작위로 3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치료 후 5년 동안의 재범을 파악하였으며, 재범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보면 약물과 관련된 환각, 편집증, 폭력행동 등 문제 경험, 치료 후 절제하는 동안 자조모임이나 부가적인 다른 처우에의 참여 등이 있을수록 치료 후 보다 긴 기간 동안 약물을 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약물사용, 메스암페타민 판매는 재범과 관련되는 위험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사용자중 판매도 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범죄의 재범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 중 자조모임이나 부가적인 처우에의 참여가 가장

큰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Brecht and Herbeck, 2014:7).

여기서의 연구결과들을 보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할수록, 범죄경력이 많을수록, 마약류 사용뿐만 아니라 판매를 하는 경우에 마약류 사용 재범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가족이나 주변의 지지,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처우 프로그램을 받는 것은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형의 유예시의 보호관찰 등 사후관리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약류사범의 재범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호관찰시에 재범관련 요인을 고려하여 범죄경력자나 마약류 사용과 더불어 판매를 한 경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필요한 처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제2절 마약류사범의 처우관련 논의

마약류사범의 특성 및 범죄관련 요인을 살펴 본 것에 이어서 마약류사범에 대한 처우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가 형의 유예를 받은 마약류사범에 대한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사회내 처우를 중심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와 처우프로그램 효과 등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한다.

먼저 마약류사범에 대한 처우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약류사범의 가정, 사회경제적 문제, 정신건강 문제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논의된다. 약물남용자들은 가정문제, 사회적 기술 부족, 교육이나 고용문제, 정신건강문제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약물이나 다른 범죄의 재범과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처우에서 이러한 요인들을 다루어야만 한다는 것이다⁸⁾. 일례로, 약물남용과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약물남용

8)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b), Principles of Drug Abuse Treatment for Criminal Justice Populations - A Research-Based Guide: Are relapse risk factors different in offender populations? How should drug abuse treatment deal with these risk factors?, <https://www.drugabuse.gov/publications/principles-drug-abuse-treatment-criminal-justice-populations/are-relapse-risk-factors-different-in-offender-popu>, 최종방문 2017. 9. 22.

치료와 정신의학적 치료를 결합하는 통합된 처우가 필요하다.⁹⁾

이를 위해서는 마약류사범 개별 대상자에 대한 욕구(필요) 평가와 특정 범죄관련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다룰 수 있는 개입을 해야 하는 것이다. 마약류사범에 대한 처우에서 감시만으로는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없으며, 다른 요인들이 개입되어야 범죄감소에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는 것이다(Hyatt and Barnes, 2017: 29). 일반적으로 마약류사범에 대한 효과적 개입을 위해서는 이들의 범행동기, 약물사용에 저항하는 기술 등을 다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도 개인의 필요에 맞추어진 처우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에게 맞추어진 개입은 건강한 대인관계발달을 촉진하고 대상자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가족, 동료,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¹⁰⁾

둘째, 마약류사범을 대상으로 자신의 범죄행위와 관련해서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범죄행위에 대한 정당화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신의 판단 실수 등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¹¹⁾

셋째, 마약류사범의 범죄행위유형이나 약물종류 등을 고려한 처우 및 사후관리가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참고로 미국 약물법원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메스암페타민 사용자와 다른 약물 사용자의 재범감소에 효과적이지만, 약물운전자의 재범감소와는 관련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Banks and Gottfredson, 2003). 이러한 결과는 마약류범죄자의 행위특성 등에 따라서 처우가 달라져야 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9)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a), Principles of Drug Abuse Treatment for Criminal Justice Populations-A Research-Based Guide: Principles, <https://www.drugabuse.gov/publications/principles-drug-abuse-treatment-criminal-justice-populations/principles>, 최종 방문 2017. 9. 22.

10)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a), Principles of Drug Abuse Treatment for Criminal Justice Populations-A Research-Based Guide: Principles, <https://www.drugabuse.gov/publications/principles-drug-abuse-treatment-criminal-justice-populations/principles>, 최종 방문 2017. 9. 22.

11)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a), Principles of Drug Abuse Treatment for Criminal Justice Populations-A Research-Based Guide: Principles, <https://www.drugabuse.gov/publications/principles-drug-abuse-treatment-criminal-justice-populations/principles>, 최종 방문 2017. 9. 22.

Caudy 등(2014)은 보호관찰을 받는 약물사용자를 대상으로 보호관찰기간 중의 불법적 약물사용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연령과 중독성 마약의 사용이 보호관찰기간 중의 불법적 약물사용에 대해 가장 강한 예측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젊은 사람들과 중독성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보다 강한 통제와 처우가 필요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형사사법체제로 들어오는 약물사용자가 동질적이기 보다는 이질적인 집단이며, 이를 고려해서 개별 범죄자 특성에 맞는 처우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마약류사범의 약물종류나 특성 등에 맞는 처우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넷째, 주변 환경에 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주변 사람의 중요성은 외국의 연구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Owens과 McCrady(2014)는 연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에 알콜이나 약물로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성인남자 보호관찰대상자 5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강성마약, 혹은 중독성 마약사용자와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약물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범죄자의 경우 주로 마약류를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속에 있고, 이러한 네트워크가 마약류범죄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집행유예를 받은 마약류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 모니터링이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치료와 감시가 중요한 요소라고 논의된다. 참고로 Listwan 등(2009)은 사회 내 약물법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메스암페타민 사용자(129명)와 다른 약물사용자(101명)의 재범율과 프로그램 완수를 비교하였다(Listwan et al., 2009: 631). 여기서 약물법원 프로그램은 철저한 감시와 빈번한 소변검사, 그리고 약물관련 치료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Listwan et al., 2009: 632).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메스암페타민과 다른 약물사용자 사이에서 유사하게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이들은 마약류사범에게 있어서 구금보다는 감시와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Listwan et al., 2009: 640). 이들의 연구와 유사하게 감시 중 하나로 약물검사가 효과적이라는 논의가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특정 날짜에 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매일 무작위로 일정 대상자를 검사하는 것이 책임감을 증가시키고, 약물 양성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도 제시되고 있다(Shannon et al., 2015: 59-60). 즉 불시에 약물검사를 하는 것이 마약류 사용을 억제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섯째, 마약류사범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는 담당직원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논의된다. 형사사법기관과 치료전문가와의 협력은 약물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효과적 개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약물남용 카운슬러로서의 보호관찰 직원의 전문화는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약물사범에 대한 효과적 처우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¹²⁾.

일곱째,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가 필요하다. 약물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앞서도 보았듯이 주거, 교육, 직업, 건강관련 욕구, 가족관계 개선 등 복합적 욕구(필요)를 가지고 있다. 보호관찰단계에서는 재범감소라는 목표와 더불어 이러한 욕구를 다루기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들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¹³⁾ 이는 마약류사범의 재범예방 및 재사회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이상에서 기존 논의를 중심으로 마약류사범에 대한 처우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해 보았다. 기존 논의를 정리해 보면, 마약류사범의 재범예방 및 재사회화를 위해서는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위의 요소들이 포함된 보호관찰이 마약류사범에게 효과적임을 보여준 연구도 있다. Shannon 등(2015)의 연구에서는 마약류사범 보호관찰 중 약물검사 횟수를 늘리고, 불시 검사를 하며,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자원들을 연계하는 것, 또한 범죄를 억제하는 생활기술 향상 등 통합적인 접근을 하는 보호관찰방법이 효과적임을 보여 주었다. 즉, 이러한 프로그램의 보호관찰대상자들이 비교집단 보호관찰대상자에 비해 보호관찰기간 중 약물 양성 반응이나 폭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마약류사범에 대한 처우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대상자에게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연구로 김용석과 장정연(2005)은 약물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는 여성 24명을 대상으로 집단개입 프로

12) American Probation and Parole Association, Substance Abuse Treatment, https://www.appa-net.org/eweb/Dynamicpage.aspx?site=APPA_2&webcode=IB_PositionStatement&wps_key=7fc2f2f7-f752-4c3e-adb8-64b4b49dfa58. 최종방문 2017. 9. 21.

13) American Probation and Parole Association, Substance Abuse Treatment, https://www.appa-net.org/eweb/Dynamicpage.aspx?site=APPA_2&webcode=IB_PositionStatement&wps_key=7fc2f2f7-f752-4c3e-adb8-64b4b49dfa58. 최종방문 2017. 9. 21.

그램이 약물에 대한 사용태도와 단약자기효능감(다양한 상황에서 약물사용을 거절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들은 1년 2개월에 걸쳐 각각 8주간 프로그램으로 3차례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프로그램 참여로 약물사범 여성의 약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되었으며, 단약관련 자기효능감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용석·장정연, 2005: 339-340). 이 연구는 비록 소규모 조사이긴 하지만, 약물사용자에 대해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Listwan 등(2009)은 메스암페타민 사용자와 다른 약물사용자에 대하여 약물법원과 다른 프로그램 제공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약물종류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사회 내에서의 약물법원과 프로그램 제공이 재범감소와 관련됨을 보여 주었다. 이는 구금보다는 감시와 치료를 중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Listwan et al., 2009: 640). 한편 Harvey 등(2007)은 호주에서 약물관련 범죄자에 대한 다이버전과 사후관리 전략의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이들은 20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연구(다이버전 19개, 사후관리 1개)를 통하여 대부분은 다이버전과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재범과 약물사용을 감소시키는데, 그리고 심리적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최적 실무)요소로 파악된 것은 높은 감시수준(특히 젊은 범법자에 대한), 대상자에게 맞추어진 구조화된 프로그램, 출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전략(여행 바우처, 지리적 근접성), 개인적 피드백과 긍정적 강화 등이었다(Harvey et al., 2007: 385).

마약류사범에 대해서 대안적 제재의 유용성을 보여준 연구도 있다. De Wree 등(2009)은 벨기에에서 약물사범 565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대안적 제재(유죄판결 받은 경우의 보호관찰, 전자감시, 조건부 석방 등)가 재범을 감소와 생활에서의 긍정적 결과(친사회적 여가시간 및 사회관계 개선 등)를 가져왔음을 보여 주었다. 여기서의 결과를 통해 유죄판결 받은 마약류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이 마약류사범의 재범예방은 물론 긍정적 생활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살펴 본 마약류사범에 대한 처우프로그램 평가를 보면, 재범예방이나 태도에 있어서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마약류사범의 특성을 고려한 처우가 필요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집행유예를 받은 마약류사범의 특성 및 처분

김 지 영

제3장

집행유예를 받은 마약류사범의 특성 및 처분

제1절 집행유예를 받은 투약사범의 특성

1.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 국적

투약유무에 따른 국적을 보면 투약사범중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1324명(83.9%), 외국인인 254명(16.1%)인 것으로 나타났고, 비투약사범 내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이 260명(85.8%), 외국인이 43명(14.2%)인 것으로 나타나, 투약사범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약간 높았다(표 3-1 참조).

나. 성별

투약사범의 성별을 분석하기 위해 비투약사범집단과 비교하였다. 투약사범중에서 남성이 1,254명(79.7%), 여성은 319명(20.3%)인 것으로 나타났고, 비투약사범의 경우

〈표 3-1〉 투약자의 국적

단위: 명, %

구분	투약유무				전체	
	투약		비투약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대한민국	1,324	83.9	260	85.8	1,584	84.2
외국	254	16.1	43	14.2	297	15.8
전체	1,578	100.0	303	100.0	1,881	100.0

$\chi^2=.694$, $df=1$

〈표 3-2〉 투약자의 성별

단위: 명, %

구분	투약유무				전체	
	투약		비투약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남성	1,254	79.7	253	82.4	1,507	80.2
여성	319	20.3	54	17.6	373	19.8
전체	1,573	100.0	307	100.0	1,880	100.0

 $\chi^2=1.169$, $df=1$

남성 253명(82.4%), 여성 54명(17.6%)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투약사범과 비투약사범 두 집단 모두에서 남성이 여성보다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투약사범 집단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3%인 것에 비해 비투약사범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6%인 것으로 나타나 투약집단에서 여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표 3-2 참조).

다. 연령¹⁴⁾

투약사범의 연령을 비투약사범과 비교해보면 투약집단 내에서는 40세 이상-50세미만이 493명(30.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30세 이상-40세미만 476명(29.6%), 50세 이상 384명(23.9%), 20세 이상-30세미만 253명(15.7%), 20세 미만 1명(0.1%)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투약집단 내에서는 50세 이상 104명(33.5%) 30세 이상-40세미만 90명(28.9%), 40세 이상-50세미만이 79명(25.4%), 20세 이상-30세미만 38명(12.2%)의 순으로 나타났다. 투약사범의 경우는 40대가 가장 많았으나 비투약사범의 경우는 50대 이상이 가장 많았다(표 3-3 참조).

라. 직업

투약사범과 비투약사범 모두 집단내에서 무직이 각각 433명(26.9%), 86명(27.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투약사범에서는 자영업 277명(17.2%), 사무직과 기술직 212명(13.2%), 판매/서비스직 197명(12.3%), 일반작업직 175

14) 여기에 제시된 마약사범의 나이는 만 연령으로 계산되었다.

〈표 3-3〉 투약자의 연령

단위: 명, %

구분	투약유무				전체	
	투약		비투약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20세 미만	1	0.1	0	0.0	1	0.1
20세 이상-30세 미만	253	15.7	38	12.2	291	15.2
30세 이상-40세미만	476	29.6	90	28.9	566	29.5
40세 이상-50세미만	493	30.7	79	25.4	572	29.8
50세 이상	384	23.9	104	33.5	488	25.4
전체	1,607	100.0	311	100.0	1,918	100.0

 $\chi^2=14.132$, $df=4$, $p<.01$

명(10.9%), 기타 106명(6.6%), 기능공과 숙련공 52명(3.2%), 농수산축산업 42명(2.6%), 유흥업소 종사자 38명(2.4%), 학생 26명(1.6%), 가정주부 21명(1.3%), 전문직 17명(1.1%), 경영관리직 12명(0.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 투약자의 사건당시 직업

단위: 명, %

구분	투약유무				전체	
	투약		비투약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농산,수산,축산업	42	2.6	9	2.9	51	2.7
자영업	277	17.2	37	11.8	314	16.3
판매/서비스직	197	12.3	46	14.6	243	12.6
기능공,숙련공	52	3.2	12	3.8	64	3.3
일반작업직	175	10.9	27	8.6	202	10.5
사무직,기술직	212	13.2	42	13.4	254	13.2
경영관리직	12	0.7	2	0.6	14	0.7
전문직	17	1.1	10	3.2	27	1.4
가정주부	21	1.3	11	3.5	32	1.7
학생	26	1.6	10	3.2	36	1.9
무직	433	26.9	86	27.4	519	27
유흥업소 종사자	38	2.4	4	1.3	42	2.2
기타	106	6.6	18	5.7	124	6.5
전체	1,608	100.0	314	100.0	1,922	100.0

 $\chi^2=28.928$, $df=12$, $p<.01$

비투약 집단에서는 무직 다음으로 판매/서비스직 46명(14.6), 사무직과 기술직 42명(13.4%), 자영업 37명(11.8%), 기타 18명(5.7%), 일반작업직 27명(8.6%), 기능공과 숙련공 12명(3.8%), 가정주부 11명(3.5%), 학생 10명(3.2%), 농수산축산업 9명(2.9%), 유흥업소 종사자 4명(1.3%), 경영관리직 2명(0.6%)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차이를 보면 투약 집단내에서는 무직 다음으로 자영업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비투약 집단내에서는 판매/서비스직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4 참조).

마. 거주지

투약사범의 거주지를 비투약사범과 비교하였다. 투약사범의 경우 서울이 390명(24.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경기 345명(21.6%), 인천 155명(9.7%)인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표 3-5〉 투약자의 거주지

단위: 명, %

구분	투약유무				전체	
	투약		비투약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서울	390	24.4	76	24.2	466	24.4
부산	134	8.4	23	7.3	157	8.2
인천	155	9.7	36	11.5	191	10
수원	25	1.5	4	1.3	29	1.5
대전	35	2.2	4	1.3	39	2.0
광주	36	2.3	7	2.0	43	2.2
대구	60	3.8	11	3.5	71	3.7
경기	345	21.6	75	23.9	420	22
충북	31	1.9	5	1.6	36	1.9
충남	95	5.9	14	4.5	109	5.7
경북	36	2.3	18	5.7	54	2.8
경남	121	7.6	18	5.7	139	7.3
전북	17	1.0	4	1.3	21	1.1
전남	12	0.7	6	1.9	18	0.9
제주	11	0.7	3	1.0	14	0.7
강원	45	2.8	4	1.3	49	2.6
기타	51	3.2	6	1.9	57	3.0
전체	1,599	100.0	314	100.0	1,913	100.0

$\chi^2=24.743, df=16$

〈표 3-6〉 투약자의 거주지역특성

단위: 명, %

구분	투약유무				전체	
	투약		비투약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대도시	871	55.2	166	54.2	1,037	55.0
중소도시	617	39.1	117	38.3	734	39.0
농어촌 등	90	5.7	23	7.5	113	6.0
전체	1,578	100.0	306	100.0	1,884	100.0

 $\chi^2=1.496, df=2$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부산 134명(8.4%), 경남 121명(7.6%)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 경남의 비율이 높은 것은 지역적으로 바다에 접해 있고 외국과의 교통이 활발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비투약사범의 경우 역시 서울 76명(24.2%), 경기 75명(23.9%), 인천 36명(11.5%)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부산 23명(7.3%)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5 참조).

투약사범의 거주지 특성을 비투약사범과 비교하였다. 투약사범과 비투약사범 모두에서 대도시가 각각 871명(55.2%), 166명(54.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중소도시 617명(39.1%), 117명(38.3%), 농어촌 등은 각각 90명(5.7%), 23명(7.5%)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6 참조).

2. 사건특성

가. 죄명

투약사범의 죄명을 분석하였다. 투약사범 내에서 향정이 1368명(84.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대마 400명(24.8%), 마약 27명(1.7%)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투약사범 내에서도 향정이 247명(78.7%), 대마 64명(20.4%), 마약 13명(4.1%)으로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다. 투약사범의 죄명을 보면 비투약사범에 비해 대마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7 참조).

〈표 3-7〉 투약자의 죄명(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투약유무				전체	
	투약		비투약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마약	27	1.7	13	4.1	40	2.1
향정	1,368	84.8	247	78.7	1,615	83.8
대마	400	24.8	64	20.4	464	24.1
전체	1,613		314		1,927	

나. 범죄유형

투약사범에게 투약이외 어떤 유형의 범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투약사범의 경우는 매수 605명(37.5%), 기타 469명(29.0%), 소지 304명(18.8%), 매도 156명(9.7%)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투약사범에서는 기타 범죄가 가장 많았으며(178명, 56.5%), 다음으로 매수 93명(29.5%), 매도 76명(24.1%), 소지 39명(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투약사범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수와 소지범죄가 많았고 비투약사범에서는 매도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8 참조).

다. 이중경합범죄유무

투약사범에서는 이중경합범죄가 아닌 경우가 1411명(89.7%), 이중경합범죄인 경우는 162명(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투약사범에서는 이중경합범죄가 아닌 경우가

〈표 3-8〉 투약자의 범죄유형(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투약유무				전체	
	투약		비투약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매수	605	37.5	93	29.5	698	36.2
매도	156	9.7	76	24.1	232	12.0
소지	304	18.8	39	12.4	343	17.8
기타	469	29.0	178	56.5	647	33.5
전체	1,615		315		1,930	

〈표 3-9〉 투약자의 이중경합범죄유무

단위: 명, %

구분	투약유무				전체	
	투약		비투약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이중경합범죄 없음	1,411	89.7	249	81.1	1,660	88.3
이중경합범죄	162	10.3	58	18.9	220	11.7
전체	1,573	100.0	307	100.0	1,880	100.0

 $\chi^2=18.359, df=1, p<.001$

249명(81.1%), 이중경합범죄인 경우가 58명(18.9%)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약사범과 비투약사범 대부분이 이중경합범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투약 집단에서(10.3%)보다는 비투약 집단에서(18.9%) 좀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표 3-9 참조).

라. 공범유무 및 공범간의 관계

투약사범의 공범유무에 관해 분석하였다. 투약사범의 경우 공범이 없는 경우가 814명(50.5%)으로 공범이 있는 경우인 797명(49.5%)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투약사범의 경우 공범이 없는 경우가 212명(67.3%)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공범이 있는 경우는 103명(32.7%)에 지나지 않아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표 3-10 참조).

공범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투약사범과 비투약사범 모두 기타가 각각 493명(63.5%),

〈표 3-10〉 투약자의 공범유무

단위: 명, %

구분	투약유무				전체	
	투약		비투약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공범 없음	814	50.5	212	67.3	1,026	53.3
공범 있음	797	49.5	103	32.7	900	46.7
전체	1,611	100.0	315	100.0	1,926	100

 $\chi^2=29.781, df=1, p<.001$

〈표 3-11〉 공범자들간 관계(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투약유무				전체	
	투약		비투약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친구 및 선후배	144	18.6	11	11.0	155	17.7
직장동료	21	2.7	10	10.0	31	3.5
가족 및 친척	28	3.6	5	5.0	33	3.8
이웃	73	9.4	13	13.0	86	9.8
안면만 있는 사이	7	0.9	2	2.0	9	1.0
모르는 사이	33	4.3	8	8.0	41	4.7
기타	493	63.5	56	56.0	549	62.7
전체	776		100		876	

56명(56.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판결문의 기록이 간략한 관계로 공범자들간의 관계가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친구 및 선후배가 투약사범에서는 144명(18.6%)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웃이 73명(9.4%)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투약사범의 경우는 이웃이 13명(13.0%)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친구 및 선후배는 11명(11.0%)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11 참조).

마. 마약류 종류

투약유무에 따른 마약류 종류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투약사범 내에서는 메스암페타민이 1261명(79.4%)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 403명(25.4%), 기타 113명(6.0%), 신종마약류 13명(0.8%)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투약사범의 경우 메스암페타민이 173명(55.8%), 기타 79명(25.5%), 대마 66명(21.3%), 신종마약류 4명(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두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메스암페타민을 제외하고 투약사범에서는 대마의 비율이 약간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비투약사범의 경우는 기타의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다양한 마약류와 관련된 사실을 알 수 있다(표 3-12 참조).

〈표 3-12〉 투약자의 마약류 종류(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투약유무				전체	
	투약		비투약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대마	403	25.4	66	21.3	469	24.7
메스암페타민	1,261	79.4	173	55.8	1,434	75.6
신종마약류	13	0.8	4	1.3	17	0.9
기타	113	6.0	79	25.5	192	10.1
전체	1,588		310		1,898	

바. 마약류 획득경로

투약유무에 따른 마약류 획득 경로를 보면, 투약사범의 경우 불법약물 거래업자와의 관계에서 마약을 획득한 사람이 637명(39.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알수없음 529명(32.9%), 친구 및 선후배 172명(10.7%), 기타 148명(9.2%), 인터넷 78명(4.8%), 해외에서 64명(4.0%), 스스로 제조 14명(0.9%), 직장관련 13명(0.8%), 유흥업소 3명(0.2%)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투약사범의 경우도 불법약물 거래업자와의 관계에서 마약을 획득한 경우가 88명(28.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알수없음 81명(25.9%), 기타 41명(13.1%), 해외에서 39명(12.5%), 친구 및 선후배 27명(8.6%), 인터넷 25명(8.0%), 스스로 제조 14명(4.5%), 직장관련 4명(1.3%), 유흥업소 1명(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투약사범의 경우, 친구, 선후배 등의 지인으로부터 마약을 획득한 비율이 높고, 비투약사범의 경우는 해외에서 마약을 획득한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13 참조).

사. 반성여부

투약사범과 비투약사범 중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비율이 각각 1311명(81.4%), 248명(79.0%)으로 나타나 투약사범에서 반성의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14 참조).

〈표 3-13〉 투약자의 마약류 획득 경로(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투약유무				전체	
	투약		비투약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인터넷	78	4.8	25	8.0	103	5.4
유흥업소	3	0.2	1	0.3	4	0.2
불법약물거래업자	637	39.6	88	28.1	725	37.7
친구 및 선후배	172	10.7	27	8.6	199	10.4
직장관련	13	0.8	4	1.3	17	0.9
해외에서	64	4.0	39	12.5	103	5.4
스스로 제조	14	0.9	14	4.5	28	1.5
기타	148	9.2	41	13.1	189	9.8
알수없음	529	32.9	81	25.9	610	31.7
전체	1,609		313		1,922	

아. 자수여부

투약유무에 따른 자수 여부의 차이를 살펴보면, 투약사범의 경우 자수를 하지 않은 경우가 1450명(91.4%), 비투약사범의 경우 290명(92.7%)으로 나타나 대부분 자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3-15 참조).

〈표 3-14〉 투약자의 범죄에 대한 반성 여부

단위: 명, %

구분	투약유무				전체	
	투약		비투약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반성하지 않음	19	1.2	9	2.9	28	1.5
반성함	1,311	81.4	248	79.0	1,559	81.0
알수없음	280	17.4	57	18.1	337	17.5
전체	1,610	100.0	314	100.0	1,924	100.0

$\chi^2=5.414, df=2$

〈표 3-15〉 투약자의 자수 여부

단위: 명, %

구분	투약유무				전체	
	투약		비투약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자수	137	8.6	23	7.3	160	8.4
자수 안함	1,450	91.4	290	92.7	1,740	91.6
전체	1,587	100.0	313	100.0	1,900	100.0

 $\chi^2=.559, df=1$

자. 조직범죄구성원 여부

투약유무에 따른 조직범죄 구성원 여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투약사범의 경우 구성원이 아닌 경우가 1587명(99.3%), 비투약사범의 경우 311명(99.7%)으로 나타나 대부분 투약유무와 상관없이 조직범죄와는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3-16 참조).

3. 범죄경력 및 처분특성

가. 범죄경력

투약유무에 따른 범죄경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투약사범과 비투약사범 모두 전과

〈표 3-16〉 조직범죄 구성원 여부

단위: 명, %

구분	투약유무				전체	
	투약		비투약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구성원	11	0.7	1	0.3	12	0.6
구성원 아님	1,587	99.3	311	99.7	1,898	99.4
전체	1,598	100.0	312	100.0	1,910	100.0

 $\chi^2=.566, df=1$

〈표 3-17〉 투약자의 범죄경력(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투약유무				전체	
	투약		비투약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동종	411	25.5	64	20.5	475	24.7
이종	185	11.5	47	15.1	232	12.1
없음	1,052	65.3	205	65.7	1,257	65.4
전체	1,610		312		1,922	

가 없는 경우가 각각 1052명(65.3%), 205명(65.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투약사범은 411명(25.5%), 비투약사범은 64명(20.5%)으로 나타났다. 이종전과를 보면 투약사범의 경우는 185명(11.5%), 비투약사범에서는 47명(15.1%)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투약사범의 경우는 동종전과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약간 높았고, 비투약사범의 경우는 이종전과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약간 높았다(표 3-17 참조).

나. 처분

투약사범 내에서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의 형유예자가 1131명(77.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6개월 이상인 경우가 284명(19.5%),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이 39명(2.7%), 12개월 미만 1명(0.1%)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투약사범 내에서는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161명(64.9%), 36개월 이상이 75명(30.3%),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이 12명(4.8%)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를 보면, 투약사범과 비투약사범 모두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이 과반수 이상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비율은 각각 77.7%와 64.9%로 투약사범이 더 높았고, 36개월 이상을 보면 각각 19.5%와 30.3%로 비투약사범의 비율이 더 높았다. 즉 투약사범에 비해 비투약사범의 집행유예 기간이 보다 긴 것을 알 수 있다(표 3-18 참조).

〈표 3-18〉 투약자의 집행유예 기간

단위: 명, %

구분	투약유무				전체	
	투약		비투약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2개월 미만	1	0.1	0	0.0	1	0.1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39	2.7	12	4.8	51	3.0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131	77.7	161	64.9	1,292	75.9
36개월 이상	284	19.5	75	30.3	359	21.0
전체	1,455	100.0	248	100.0	1,703	100.0

 $\chi^2=19.608, df=3, p<.001$

집행유예를 받은 마약류사범에 대한 부가처분내용을 분석하였다. 투약사범에서는 추징금 1557명(97.0%), 보호관찰 973명(60.6%), 수강명령 568명(35.4%), 사회봉사명령 446명(27.8%), 몰수 396명(24.7%), 기타 25명(1.6%), 없음 4명(0.2%), 치료 1명(0.1%)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투약사범에서는 추징금 207명(69.9%), 보호관찰 111명(37.5%), 사

〈표 3-19〉 투약자의 부가처분(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투약유무				전체	
	투약		비투약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보호관찰	973	60.6	111	37.5	1,084	57.0
수강명령	568	35.4	51	17.2	619	32.6
사회봉사명령	446	27.8	87	29.4	533	28.0
추징금	1,557	97.0	207	69.9	1,764	92.8
치료	1	0.1	0	0.0	1	0.1
몰수	396	24.7	84	28.4	480	25.2
기타	25	1.6	13	4.4	38	2.0
없음	4	0.2	9	3.0	13	0.7
전체	1,605		296		1,901	

회봉사명령 87명(29.4%), 몰수 84명(28.4%), 수강명령 51명(17.2%), 기타 13명(4.4%), 없음 9명(3.0%)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보면, 투약사범과 비투약사범 모두 추징금, 보호관찰의 순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투약사범의 경우는 수강명령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비투약사범의 경우는 사회봉사명령과 몰수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표 3-19 참조).

다. 변호사 선임여부

투약사범과 비투약사범 모두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가 각각 1172명(73.1%), 265명(84.1%)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마약 범죄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투약사범에서 상대적으로 변호사 선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20 참조).

제2절 보호관찰을 받은 투약사범의 특성

1.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 국적

투약사범 중에서 부가처분으로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집단과 보호관찰을 선고받지

〈표 3-20〉 투약자의 변호사 선임 여부

단위: 명, %

구분	투약유무				전체	
	투약		비투약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선임	1,172	73.1	265	84.1	1,437	74.9
비선임	432	26.9	50	15.9	482	25.1
전체	1,604	100.0	315	100.0	1,919	100.0

$\chi^2=17.123, df=1, p<.001$

〈표 3-21〉 보호관찰 투약자의 국적

단위: 명, %

구분	보호관찰				전체	
	선고		비선고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대한민국	893	94.4	421	67.7	1,314	83.8
외국	53	5.6	201	32.3	254	16.2
전체	946	100.0	622	100.0	1,568	100.0

 $\chi^2=197.256$, $df=1$, $p<.001$

않은 집단 간에 국적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모두 대한민국 국적자가 893명(94.4%), 421명(67.7%)으로 나타나 외국 국적자 53명(5.6%), 201명(32.3%)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선고 집단에서는 외국 국적자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보호관찰보다는 추방이나 기타 다른 조처들이 취해진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표 3-21번 참조).

나. 성별

부가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은 집단의 성별을 분석하였다. 보호관찰 선고 집단과

〈표 3-22〉 보호관찰 투약자의 성별

단위: 명, %

구분	보호관찰				전체	
	선고		비선고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남성	765	79.7	481	79.8	1,246	79.7
여성	195	20.3	122	20.2	317	20.3
전체	960	100.0	603	100.0	1,563	100.0

 $\chi^2=.001$, $df=1$

비선고 집단 모두에서 남성이 각각 765명(79.7%), 481명(79.8%)으로 나타났고 여성 195명(20.3%), 122명(20.2%)으로 나타나,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약 80%가량은 남성이며 집단간 성별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표 3-22 참조).

다. 연령

보호관찰 여부에 따른 연령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보호관찰 선고 집단에서는 40세 이상-50세 미만이 337명(34.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50세 이상 262명(27.1%), 30세 이상-40세미만이 257명(26.5%), 20세 이상-30세미만 112명(11.6%)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 비선고 집단 내에서는 30세 이상-40세미만 216명(34.3%), 40세 이상-50세미만 154명(24.5%), 20세 이상-30세미만 139명(22.1%), 50세 이상 119명(18.9%), 20세미만 1명(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집단의 연령대가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표 3-23 참조).

라. 직업

보호관찰선고유무에 따른 직업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보호관찰 선고집단에서는 무직이 255명(26.3%)으로 가장 높았고, 자영업 201명(20.7%), 판매/

〈표 3-23〉 보호관찰 투약자의 연령

단위: 명, %

구분	보호관찰				전체	
	선고		비선고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20세 미만	0	0.0	1	0.2	1	0.1
20세 이상-30세 미만	112	11.6	139	22.1	251	15.7
30세 이상-40세미만	257	26.5	216	34.3	473	29.6
40세 이상-50세미만	337	34.8	154	24.5	491	30.7
50세 이상	262	27.1	119	18.9	381	23.9
전체	968	100.0	629	100.0	1,597	100.0

$\chi^2=60.083, df=4, p<.001$

서비스직 137명(14.1%), 사무직 및 기술직 127명(13.1%), 일반작업직 83명(8.6%), 기타 53명(5.5%), 기능공 및 숙련공 31명(3.2%), 농수산축산업 23명(2.4%), 유흥업소 종사자 20명(2.1%), 가정주부 14명(1.4%), 전문직 10명(1.1%), 학생 8명(0.8%), 경영관리직 7명(0.7%)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선고집단에서도 무직이 175명(27.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다음으로 일반작업직 92명(14.6%), 사무직 및 기술직 84명(13.4%), 자영업 75명(11.9%), 판매/서비스직 58명(9.2%) 기타 52명(8.3%), 기능공 및 숙련공 21명(3.3%), 농수산축산업과 학생은 모두 18명(2.9%), 유흥업소 종사자 17명(2.7%), 전문직과 가정주부가 모두 7명(1.1%), 경영관리직 5명(0.8%)의 순으로 나타나 비선고집단에 비해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집단에서 자영업과 판매서비스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24 참조).

〈표 3-24〉 보호관찰 투약자의 사건당시 직업

단위: 명, %

구분	보호관찰				전체	
	선고		비선고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농산,수산,축산업	23	2.4	18	2.9	41	2.6
자영업	201	20.7	75	11.9	276	17.3
판매/서비스직	137	14.1	58	9.2	195	12.2
기능공,숙련공	31	3.2	21	3.3	52	3.3
일반작업직	83	8.6	92	14.6	175	11
사무직,기술직	127	13.1	84	13.4	211	13.2
경영관리직	7	0.7	5	0.8	12	0.8
전문직	10	1.1	7	1.1	17	1.1
가정주부	14	1.4	7	1.1	21	1.3
학생	8	0.8	18	2.9	26	1.6
무직	255	26.3	175	27.8	430	26.9
유흥업소 종사자	20	2.1	17	2.7	37	2.3
기타	53	5.5	52	8.3	105	6.6
전체	969	100.0	629	100.0	1,598	100.0

$\chi^2=53.548$, $df=12$, $p<.001$

마. 거주지

보호관찰에 따른 거주지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집단에서는 서울 226명(23.3%), 경기 184명(19.0%), 인천 114명(11.8%), 부산 106명(10.9%), 경남 82명(8.5%), 충남 63명(6.5%), 대구 39명(4.0%), 강원 35명(3.5%), 기타 22명(2.3%), 수원 19명(2.0%), 충북과 경북이 모두 17명(1.8%), 대전 12명(1.2%), 전북과 전남 10명(1.0%), 광주 9명(0.9%), 제주 5명(0.5%)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을 선고받지 않은 집단 내에서도 서울과 경기도가 가장 많아 동일하게 160명(25.8%)으로 나왔으나 선고집단과 달리 인천 40명(6.5%), 경남 38명(6.1%), 충남 32명(5.2%), 기타 29명(4.7%), 부산과 광주 모두 27명(4.4%), 대전 22명(3.6%), 대구 21명

〈표 3-25〉 보호관찰 투약자의 거주지

단위: 명, %

구분	보호관찰				전체	
	선고		비선고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서울	226	23.3	160	25.8	386	24.3
부산	106	10.9	27	4.4	133	8.4
인천	114	11.8	40	6.5	154	9.7
수원	19	2.0	6	1.0	25	1.6
대전	12	1.2	22	3.6	34	2.1
광주	9	0.9	27	4.4	36	2.3
대구	39	4.0	21	3.4	60	3.8
경기	184	19.0	160	25.8	344	21.6
충북	17	1.8	14	2.3	31	2.0
충남	63	6.5	32	5.2	95	6.0
경북	17	1.8	18	2.9	35	2.1
경남	82	8.5	38	6.1	120	7.6
전북	10	1.0	7	1.1	17	1.0
전남	10	1.0	2	0.3	12	0.8
제주	5	0.5	6	1.0	11	0.7
강원	35	3.5	10	1.5	45	2.8
기타	22	2.3	29	4.7	51	3.2
전체	970	100.0	619	100.0	1,589	100.0

$\chi^2=93.966$, $df=16$, $p<.001$

〈표 3-26〉 보호관찰 투약자의 거주지역 특성

단위: 명, %

구분	보호관찰				전체	
	선고		비선고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대도시	550	57.1	315	52.1	865	55.2
중소도시	352	36.6	261	43.1	613	39.1
농어촌 등	61	6.3	29	4.8	90	5.7
전체	963	100.0	605	100.0	1,568	100.0

 $\chi^2=7.378$, $df=2$, $p<.05$

(3.4%), 경북 18명(2.9%), 충북 14명(2.3%), 강원 10명(1.5%), 전북 7명(1.1%), 수원과 제주 6명(1.0%), 전남 2명(0.3%)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보면 보호관찰을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모두 서울과 경기 거주자들이 가장 많았으나 보호관찰선고집단에서는 부산과 인천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3-25 참조).

보호관찰유무에 따라 거주지역의 특성이 다른지 분석하였다.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집단내에서 대도시가 550명(57.1%), 중소도시 352명(36.6%), 농어촌 등 61명(6.3%)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을 선고받지 않은 집단내에서도 대도시 315명(52.1%), 중소도시 261명(43.1%), 농어촌 등 29명(4.8%)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보호관찰을 선고 받은 집단에 비해 대도시의 비율이 다소 적었다(표 3-26 참조).

2. 사건특성

가. 죄명

투약사범중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집단의 죄명을 비선고집단과 비교·분석하였다. 보호관찰 선고집단 내에서는 향정이 857명(88.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대마 218명(22.5%), 마약 12명(1.2%)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선고집단내에서는 향정이 503명(79.6%), 대마 181명(28.6%), 마약 14명(2.2%)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을

〈표 3-27〉 보호관찰 투약자의 죄명(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보호관찰				전체	
	선고		비선고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마약	12	1.2	14	2.2	26	1.6
향정	857	88.3	503	79.6	1,360	84.8
대마	218	22.5	181	28.6	399	24.9
전체	971		632		1,603	

선고받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향정의 비율이 약간 높았고 비선고집단에서는 대마의 비율이 높아 보다 강력한 마약류에 대해 보호관찰처분이 부가된 것을 알 수 있다(표 3-27 참조).

나. 범죄유형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집단이 투약이외 어떤 유형의 마약범죄를 저질렀는지 살펴보았다.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집단과 선고받지 않은 집단 모두에서 투약을 제외하고 매수가 각각 381명(39.2%), 222명(35.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각각 기타 291명(29.9%), 175명(27.7%), 소지 202명(20.8%), 101

〈표 3-28〉 보호관찰 투약자의 범죄유형(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보호관찰				전체	
	선고		비선고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매수	381	39.2	222	35.1	603	37.6
매도	70	7.2	86	13.6	156	9.7
소지	202	20.8	101	16.0	303	18.9
기타	291	29.9	175	27.7	466	29.0
전체	973		632		1,605	

명(16.0%), 매도 70명(7.2%), 86명(13.6%)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보면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집단에서는 소지의 비율이 약간 높았고, 비선고집단의 경우는 매도의 비율이 약간 높았다(표 3-28 참조).

다. 이중경합범죄유무

보호관찰유무에 따른 이중경합범죄의 유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보호관찰 선고집단에서는 이중경합범죄가 아닌 경우가 866명(91.6%), 이중경합범죄인 경우는 79명(8.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선고집단에서는 이중경합범죄가 아닌 경우가 537명(86.9%), 이중경합범죄인 경우가 81명(1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호관찰 선고집단과 비선고집단 모두 이중경합범죄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호관찰 선고집단에서 이중경합범죄가 아닌 사람들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표 3-29 참조).

라. 공범유무 및 공범간의 관계

보호관찰유무에 따른 공범유무의 차이는 매우 뚜렷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집단 내에서는 공범이 없는 경우가 553명(57.0%)으로 공범이 있는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보호관찰을 선고받지 않은 집단 내에서는 공범이 있는 경우가 373명(59.2%)로 공범이 없는 경우보다 더 높은 비율을

〈표 3-29〉 보호관찰 투약자의 이중경합범죄유무

단위: 명, %

구분	보호관찰				전체	
	선고		비선고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이중경합범죄 아님	866	91.6	537	86.9	1,403	89.8
이중경합범죄	79	8.4	81	13.1	160	10.2
전체	945	100.0	618	100.0	1,563	100.0

$\chi^2=9.163, df=1, p<.01$

〈표 3-30〉 보호관찰 투약자의 공범 유무

단위: 명, %

구분	보호관찰				전체	
	선고		비선고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공범 없음	553	57.0	257	40.8	810	50.6
공범 있음	418	43.0	373	59.2	791	49.4
전체	971	100.0	630	100.0	1,601	100.0

 $\chi^2=39.908, df=1, p<.001$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30 참조).

마. 마약류 종류

보호관찰유무에 따른 마약류 종류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집단과 선고받지 않은 집단 모두에서 메스암페타민의 비율이 818명(85.2%), 440명(71.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선고집단과 비선고집단 모두에서 대마가 각각 214명(22.3%), 188명(30.4%), 기타 46명(4.8%), 61명(9.9%), 신종마약류 4명(0.4%), 9명(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보호관찰 선고집단에서는 메스암페타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비선고집단에서는 대마의 비율이 약간 높았다(표 3-31 참조).

바. 마약류 획득경로

보호관찰에 따른 마약류 획득 경로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집단 내에서는 불법약물 거래업자로부터 획득한 경우가 442명(45.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알수없음 287명(29.6%), 기타 94명(9.7%), 친구 및 선후배 80명(8.2%), 인터넷 51명(5.3%), 해외에서 22명(2.3%), 스스로 제조 8명(0.8%), 직장관련 4명(0.4%), 유흥업소 2명(0.2%)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을 선고받지 않은 집단 내에서는 알수없음이 240명(38.2%)으로 가장 높았고, 불법약물 거래업자와의 관계에서가 192명(30.5%), 친구 및 선후배 91명(14.5%),

〈표 3-31〉 보호관찰 투약자의 마약류 종류(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보호관찰				전체	
	신고		비신고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대마	214	22.3	188	30.4	402	25.5
메스암페타민	818	85.2	440	71.2	1,258	79.7
신종마약류	4	0.4	9	1.5	13	0.8
기타	46	4.8	61	9.9	107	6.8
전체	960		618		1,578	

기타 51명(8.1%), 해외에서 42명(6.7%), 인터넷 26명(4.1%), 직장관련 9명(1.4%), 스스로 제조 6명(1.0%), 유흥업소 1명(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보호관찰을 신고받은 집단의 경우는 약물거래업자로부터 마약을 획득한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비신고집단은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마약을 획득한 경우가 많았다(표 3-32 참조).

〈표 3-32〉 보호관찰 투약자의 마약류 획득경로(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보호관찰				전체	
	신고		비신고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인터넷	51	5.3	26	4.1	77	4.8
유흥업소	2	0.2	1	0.2	3	0.2
불법약물거래업자	442	45.6	192	30.5	634	39.6
친구 및 선후배	80	8.2	91	14.5	171	10.7
직장관련	4	0.4	9	1.4	13	0.8
해외에서	22	2.3	42	6.7	64	4.0
스스로 제조	8	0.8	6	1.0	14	0.9
기타	94	9.7	51	8.1	145	9.1
알수없음	287	29.6	240	38.2	527	33.0
전체	970		629		1,599	

〈표 3-33〉 보호관찰 투약자의 자수여부

단위: 명, %

구분	보호관찰				전체	
	선고		비선고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자수	90	9.4	47	7.6	137	8.7
자수 안함	867	90.6	573	92.4	1,440	91.3
전체	957	100.0	620	100.0	1,577	100

$\chi^2=1.578, df=1$

사. 자수여부

보호관찰을 선고 받은 집단과 선고 받지 않은 집단 모두에서 90%이상이 자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집행유예 마약류사범에서 자수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표 3-33 참조).

아. 조직범죄 구성원여부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집단과 선고받지 않은 집단 모두에서 90%이상이 조직범죄 구성원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표 3-34 참조).

〈표 3-34〉 보호관찰 투약자의 조직범죄 구성원 여부

단위: 명, %

구분	보호관찰				전체	
	선고		비선고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구성원	1	0.1	10	1.6	11	0.7
구성원 아님	966	99.9	611	98.4	1,577	99.3
전체	967	100.0	621	100.0	1,588	100.0

$\chi^2=12.483, df=1, p<.001$

〈표 3-35〉 보호관찰 투약자의 마약 총구매가격

단위: 명, %

구분	보호관찰				전체	
	선고		비선고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50만원 미만	155	41.6	100	46.5	255	43.4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85	22.8	44	20.5	129	21.9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74	19.8	23	10.7	97	16.5
2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46	12.3	32	14.9	78	13.3
500만원 이상	13	3.5	16	7.4	29	4.9
전체	373	100.0	215	100.0	588	100.0

 $\chi^2=13.015$, $df=4$, $p<.05$

3. 투약특성

가. 마약구매가격

마약류사범들이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가격을 분석하였다. 보호관찰선고 집단 내에서는 50만원 미만이 155명(41.6%)으로 가장 높았고,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85명(22.8%),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74명(19.8%), 200만원이상-500만원 미만 46명(12.3%), 500만원 이상 13명(3.5%)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 비선고 집단 내에서도 50만원 미만이 100명(46.5%)으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로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44명(20.5%)으로 나타났으나 다음으로 2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2명(14.9%),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3명(10.7%), 500만원 이상 16명(7.4%)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35 참조).

나. 투약량

보호관찰유무에 따라 마약투약량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보호관찰 선고집단에서는 0.05g 이상-0.1g 미만 146명(21.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

〈표 3-36〉 보호관찰 투약자의 투약량(g)

단위: 명, %

구분	보호관찰				전체	
	선고		비선고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0.05g 미만	118	17.1	38	10.7	156	14.9
0.05g 이상-0.1g 미만	146	21.2	53	14.9	199	19.0
0.1g 이상-0.2g 미만	131	19.0	57	16.0	188	18.0
0.2g 이상-0.5g 미만	128	18.6	76	21.3	204	19.5
0.5g 이상-1g 미만	69	10.0	52	14.6	121	11.6
1g 이상-5g 미만	78	11.3	64	18.0	142	13.6
5g 이상	19	2.8	16	4.5	35	3.4
전체	689	100.0	356	100.0	1,045	100.0

 $\chi^2=27.583$, $df=6$, $p<.001$

로 0.1g 이상-0.2g 미만 131명(19.0%), 0.2g 이상-0.5g 미만 128명(18.6%), 0.05g 미만 118명(17.1%), 1g 이상-5g 미만 78명(11.3%), 0.5g 이상-1g 미만 69명(10.0%), 5g 이상 19명(2.8%)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호관찰 비선고집단에서는 0.2g 이상-0.5g 미만 이 76명(21.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1g 이상-5g 미만 64명(18.0%), 0.1g 이상-0.2g 미만 57명(16.0%), 0.05g 이상-0.1g 미만이 53명(14.9%), 0.5g 이상-1g 미만 52명(14.6%), 0.05g 미만 38명(10.7%), 5g 이상 16명(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보호관찰 비선고집단에서 0.2g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사람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표 3-36 참조).

다. 투약횟수

보호관찰 선고집단과 비선고집단간의 투약횟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보호관찰 선고집단내에서는 1회가 280명(29.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2회 239명(24.8%), 5회 이상-10회 미만 158명(16.4%), 3회 149명(15.5%), 4회 89명(9.2%), 10회 이상-30회 미만 44명(4.6%), 30회 이상 5명(0.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7〉 보호관찰 투약자의 투약횟수

단위: 명, %

구분	보호관찰				전체	
	선고		비선고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회	280	29.0	217	34.9	497	31.4
2회	239	24.8	138	22.2	377	23.8
3회	149	15.5	96	15.5	245	15.5
4회	89	9.2	64	10.3	153	9.7
5회 이상-10회 미만	158	16.4	70	11.3	228	14.4
10회 이상-30회 미만	44	4.6	31	5.0	75	4.6
30회 이상	5	0.5	5	0.8	10	0.6
전체	964	100.0	621	100.0	1,585	100.0

 $\chi^2=13.205$, $df=6$, $p<.05$

보호관찰 비선고집단내에서도 1회가 217명(34.9%), 2회가 138명(22.2%)으로 선고집단과 동일한 순서를 보였으나 다음으로는 3회 96명(15.5%), 4회 64명(10.3%), 5회 이상-10회 미만 70명(11.3%), 10회 이상-30회 미만 31명(5.0%), 30회 이상 5회(0.8%)의 순으로 나타나 선고집단에 비해 투약횟수의 적은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보호관찰 선고집단은 비선고집단에 비해 투약량은 적으나 투약횟수는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37 참조).

라. 투약간격

보호관찰유무에 따라 마약투약간격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보호관찰을 선고 받은 집단에서는 1회만 투약한 경우가 272명(28.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1달에 1-2회 213명(22.3%), 기타 183명(19.1%), 1주일에 1-2회 135명(14.2%), 2-3달에 1-2회 80명(8.4%), 알수없음 37명(3.9%), 6개월에 1-2회 34명(3.6%)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보호관찰 비선고집단에서도 1회만 투약한 사범들이 214명(34.9%)으로 가장 많았고

〈표 3-38〉 보호관찰 투약자의 투약간격

단위: 명, %

구분	보호관찰				전체	
	선고		비선고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회만 투약	272	28.5	214	34.9	486	31.0
1주일에 1-2회	135	14.2	99	16.1	234	14.9
1달에 1-2회	213	22.3	126	20.5	339	21.6
2-3달에 1-2회	80	8.4	51	8.3	131	8.4
6개월에 1-2회	34	3.6	25	4.1	59	3.8
기타	183	19.1	70	11.4	253	16.1
알수없음	37	3.9	29	4.7	66	4.2
전체	954	100.0	614	100.0	1,568	100.0

 $\chi^2=21.297, df=6, p<.01$

두 번째로 1달에 1-2회 126명(20.5%)으로 나타났으나 다음으로 1주일에 1-2회 99명(16.1%), 기타 70명(11.4%), 2-3달에 1-2회 51명(8.3%), 알수없음 29명(4.7%), 6개월에 1-2회 25명(4.1%)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38 참조).

마. 투약기간

보호관찰유무에 따라 투약기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보호관찰 선고집단에서는 5개월 미만이 312명(62.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5개월 이상-10개월 미만이 111명(22.3%), 10개월 이상-15개월 미만 48명(9.7%), 15개월 이상 26명(5.2%)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 비선고집단에서도 5개월 미만이 170명(55.2%)으로 가장 많았고, 5개월 이상-10개월 미만 88명(28.6%), 10개월 이상-15개월 미만 36명(11.7%), 15개월 이상 14명(4.5%)의 순으로 나타나 두 집단의 투약기간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39 참조).

〈표 3-39〉 보호관찰 투약자의 투약기간

단위: 명, %

구분	보호관찰				전체	
	선고		비선고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5개월 미만	312	62.8	170	55.2	482	59.9
5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111	22.3	88	28.6	199	24.7
10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48	9.7	36	11.7	84	10.4
15개월 이상	26	5.2	14	4.5	40	5.0
전체	497	100.0	308	100.0	805	100.0

 $\chi^2=5.750$, $df=3$

바. 투약장소

보호관찰유무에 따른 투약장소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집단에서는 본인집이 367명(38.0%)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숙박업소가 319명(33.1%), 자동차 189명(19.6%), 기타 150명(15.5%), 공범집 94명(9.7%), 노상 63명(6.5%), 상가 45명(4.7%), 유흥업소 40명(4.1%), 알수없음 11명(1.1%), 공원 9명(0.9%)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을 선고받지 않은 집단에서는 본인집 207명(32.9%), 숙박업소 195명(31.0%), 기타 117명(18.6%), 자동차 91명(14.4%), 공범집 89명(14.1%), 유흥업소 59명(9.4%), 노상 38명(6.0%), 상가 25명(4.0%), 사무실 22명(3.5%), 알수없음 10명(1.6%), 공원 7명(1.1%)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40 참조).

사. 투약방법

보호관찰유무에 따라 마약을 투약한 방법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집단 내에서는 주사가 510명(52.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흡입 377명(39.0%), 음료 214명(22.2%), 투약 40명(4.1%), 기타 4명(0.4%)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선고 집단 내에서는 흡입이 399명(64.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

〈표 3-40〉 보호관찰 투약자의 투약장소(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보호관찰				전체	
	선고		비선고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본인집	367	38.0	207	32.9	574	36.0
공범집	94	9.7	89	14.1	183	11.5
숙박업소	319	33.1	195	31.0	514	32.2
사무실	52	5.4	22	3.5	74	4.6
유흥업소	40	4.1	59	9.4	99	6.2
상가	45	4.7	25	4.0	70	4.4
노상	63	6.5	38	6.0	101	6.3
공원	9	0.9	7	1.1	16	1.0
자동차	189	19.6	91	14.4	280	17.6
기타	150	15.5	117	18.6	267	16.7
알수없음	11	1.1	10	1.6	21	1.3
전체	965		630		1,595	

고, 다음으로 주사 166명(26.7%), 음료 96명(15.4%), 투약 20명(3.2%)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집단에서는 주사기를 사용한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비선

〈표 3-41〉 보호관찰 투약자의 투약방법(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보호관찰				전체	
	선고		비선고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투약	40	4.1	20	3.2	60	3.8
음료	214	22.2	96	15.4	310	19.5
흡입	377	39.0	399	64.1	776	48.9
주사	510	52.8	166	26.7	676	42.6
기타	4	0.4	0	0.0	4	0.3
전체	966		622		1,588	

〈표 3-42〉 보호관찰 투약자의 범죄경력(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보호관찰				전체	
	선고		비선고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동종	282	29.0	128	20.3	410	25.6
이종	113	11.6	70	11.1	183	11.4
없음	608	62.6	437	69.5	1,045	65.3
전체	971		629		1,600	

고집단에서는 흡입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41 참조).

4. 범죄경력 및 처분특성

가. 범죄경력

보호관찰유무에 따른 범죄경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집단에서는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가 282명(29.0%), 이종전과가 있는 경우는 113명(11.6%)으

〈표 3-43〉 보호관찰 투약자의 집행유예 기간

단위: 명, %

구분	보호관찰				전체	
	선고		비선고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2개월 미만	1	0.1	0	0.0	1	0.1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8	0.8	29	6.1	37	2.5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750	77.2	379	79.3	1,129	77.9
36개월 이상	213	21.9	70	14.6	283	19.5
전체	972	100.0	478	100.0	1,450	100.0

$\chi^2=43.884$, $df=3$, $p<.001$

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을 선고받지 않은 집단에서는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128명(20.3%), 이종전과 70명(1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호관찰집단에서 동종전과의 비율이 약간 높았다(표 3-42 참조).

나. 처분

보호관찰여부에 따라 집행유예기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보호관찰 선고 집단과 비선고 집단 모두에서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은 750명(77.2%), 379명(79.3%)으로 각각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3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12개월 미만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개월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의 비율이 보호관찰 선고집단에서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집단이 비선고집단에 비해 집행유예기간이 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표 3-43 참조).

보호관찰유무에 따른 부가처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어떤 부가처분을 받았는지 살펴보면, 추징금 937명(97.0%), 수강명령 476명(49.3%), 사회봉사명령 379명(39.2%), 몰수 214명(22.2%), 기타 3명(0.3%), 치료 1명(0.1%)의 순으

〈표 3-44〉 보호관찰 투약자의 부가처분(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보호관찰				전체	
	선고		비선고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수강명령	476	49.3	92	14.6	568	35.5
사회봉사명령	379	39.2	67	10.6	446	27.9
추징금	937	97.0	620	98.1	1557	97.4
치료	1	0.1	0	0.0	1	0.1
몰수	214	22.2	182	28.8	396	24.8
기타	3	0.3	22	3.5	25	1.6
없음	0	0.0	4	0.6	4	0.3
전체	966		632		1,598	

로 나타났다. 한편, 보호관찰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들의 부가처분을 살펴보면, 추징금 620명(98.1%), 몰수 182명(28.8%), 수강명령 92명(14.6%), 사회봉사명령 67명(10.6%), 기타 22명(3.5%)의 순으로 나타났고, 부가처분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도 4명(0.6%)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보면, 두 집단 모두 추징금을 부가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았으나 보호관찰 선고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처분 받은 사람이 많았고, 보호관찰 비선고집단에서는 몰수를 받은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3-44 참조).

다. 변호사선임여부

보호관찰에 따라 변호사 선임 여부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즉 변호사 선임이 보호관찰 부가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 것이다.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집단과 비선고 집단 모두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이 비선임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호관찰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들은 80%이상이 변호사를 선임한 반면,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60%만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변호사 선임비율이 적었다.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표 3-45 참조).

〈표 3-45〉 보호관찰 투약자의 변호사 선임 여부

단위: 명, %

구분	보호관찰				전체	
	선고		비선고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선임	656	67.8	507	80.9	1,163	73.0
비선임	311	32.2	120	19.1	431	27.0
전체	967	100.0	627	100.0	1,594	100.0

$\chi^2=32.698$, $df=1$, $p<.001$

제3절 소결

2016년 한 해 동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마약사범에 대한 판결문조사는 투약사범의 특성과 처분특성에 관해 분석하여 중독을 보이는 마약류사범에 대해 얼마나 적절한 처분이 부과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연구결과를 보면 먼저, 투약사범은 비투약사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낮고, 자영업자의 비율이 약간 높다. 범죄관련 사항에서는 대마를 사용한 비율이 높고, 매수범죄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중경합범죄 비율은 적고, 공범이 있는 경우가 많다. 마약투약이 중독성을 가지는 특성상 동종전과자의 비율이 비투약사범에 비해 높았으며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 받은 비율도 높았다. 그러나 투약사범들은 비투약사범에 비해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낮았다.

분석대상이 된 투약사범 중에 보호관찰을 부가 받은 사람은 약 60%인데 보호관찰을 부가 받은 집단과 부가 받지 않은 집단을 비교·분석하여 얼마나 적절한 처분이 내려졌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보호관찰선고집단의 90%가 내국인인데 반해, 비선고집단은 67%만이 내국인이었다. 이는 외국인의 경우, 추방 등의 기타 처분들이 내려진 때문으로 보인다. 보호관찰 선고집단은 비선고 집단에 비해 연령대는 높으며 자영업자와 판매·서비스직의 비율이 약간 높았고 상대적으로 부산과 인천 등 대도시 거주자가 많았다. 범죄관련 특성을 보면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집단에서는 향정사범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이중경합범죄의 비율은 낮으며 단독범인 경우가 많았다. 보호관찰 선고자의 절반 가까이가 불법약물거래업자로부터 마약을 취득하였는데 비선고집단에 비해 투약량은 적으나 투약횟수는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용량과 횟수가 처분과 뚜렷한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투약방법에서는 주사기로 투약한 사범에 대해 보호관찰이 부가된 비율이 높았다. 보호관찰 선고집단은 비선고집단에 비해 동종전과자의 비율이 약간 높고 향정사범의 비율도 높으며 지인보다는 불법약물업자로부터 마약을 취득한 사람이 많아 이점에서는 처분이 적절하게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독성이나 재범가능성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을 경우 보호관찰이 부가될 가능성도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약류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등 부가처분 운영현황

전영실

마약류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등 부가처분 운영현황

제1절 형의 유예처분시 부과되는 보호관찰 등의 성격

우리나라에서는 형을 유예하는 경우, 즉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에 보호관찰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형법 제59조의 2에 따르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때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62조의 2에 따르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서 보호관찰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으로 되어 있지만, 법원이 유예기간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집행유예 대상자에 대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부과할 경우에는 사회봉사 500시간, 수강명령 200시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1항). 즉,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공통적으로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보호관찰과 더불어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¹⁵⁾

이러한 형법 규정을 반영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형법 제59조의 2, 제62조의 2에 의해 보호관찰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 보호관찰기간은 그 유예기간이지만, 법원이 보호관찰 기간을 따로 정할 경우에는 정한 기간이 보호관찰기간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이는 형을 유예할 경우 범죄자나 범죄특성을 고려해서 비개입보다는 보호관찰 등의 사후관리적인 차원에서의 재범예방을 위한 개입이

15) 이에 대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역시 보호관찰과 마찬가지로 사회내 처우의 하나로 보고 선고유예의 경우를 집행유예와 다르게 볼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제시되고 있다(김재희, 2011: 11).

필요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보호관찰은 사회내 처우 중 하나이며,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에 대해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일정 기간 지도감독 등을 받게 하는 것이다(김혜정, 2001: 111). 이러한 보호관찰은 범죄자의 개선과 교화 등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이루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김혜정, 2001: 123). 보호관찰은 범죄자의 사회복귀 등을 위해 이루어지며, 보호관찰대상자가 사회복귀 등을 위해 필요한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제재를 통해 처벌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윤웅장, 2003: 79).

여기서 살펴보는 보호관찰은 형벌을 유예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서 형벌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형벌과 달리 보호관찰은 처벌은 아니기 때문에 형벌과 구분된다. 특히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부과되고, 보호관찰 부과가 자유의 박탈이나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벌과 구분된다(박상진, 2000: 390). 집행유예에 부가해서 이루어지는 보호관찰 처분은 형을 유예하면서 부과되는 것이며, 형의 완하시 조건으로 부과되는 것이다(김혜정, 2001: 125).

이러한 보호관찰은 형벌부과만으로는 형사제재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자에게 이루어지는 치료, 교육, 재사회화를 위한 형벌 이외의 예방적 성격의 조치를 의미한다(김혜정, 2001: 180).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것은 재범위험성이 있더라도 지도감독과 교육 등을 통하여 재범예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김혜정, 2001: 125).

이상에서 형의 유예시에 조건으로 부과되는 보호관찰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의 논의를 통하여 형을 유예할 경우 부과되는 보호관찰은 지도감독 등의 개입을 통하여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재사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마약류사범의 경우 앞서도 언급했듯이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형을 유예할 경우 사후관리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마약류사범의 재범예방 및 재사회화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형의 유예시 보호관찰 등이 부과되는 것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약류사범에 대해 형의 유예시 부과되는 보호관찰에 대해 살펴 본 것에 이어서 집행유예처분시에 부과될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봉사명령은 무보수 강제노동을 함으로써 죄를 반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근로정신을 증진하고 자긍심을 회복시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손외철, 2011: 95). 사회봉사명령의 경우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범죄를 저지룰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노동력 제공으로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노동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 사회에 대해 무상의 노동력 제공으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재희, 2011: 19).

범죄학이론 중 하나인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에 의하면 합법적 목표와 수단 모두를 포기할 경우 약물 남용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Akers et al., 2017: 345).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사회봉사를 통한 근로의욕 고취 및 노동하는 생활습관 형성은 마약류사범이 약물중독에 빠지는 것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강명령은 교육과 의식개선을 통하여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수강명령을 통해 마약류사범이 스스로 약물문제 발생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고, 약물에 대한 대처능력과 사회적응력을 향상시켜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이법호, 2011: 66). 마약류사범의 경우 약물의 폐해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범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형의 유예시 부과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에 대해 살펴 보았다. 참고로 현재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처우는 마약류관리법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있는 치료보호제도,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정치료,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치료감호제도, 그리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이 있다(이인영, 2014: 83). 이렇게 본다면 형의 유예시 선택가능한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을 통하여 이들의 특성에 맞는 처우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제2절 마약류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등 운영실태

1. 일반적인 절차 및 운영

마약류사범은 보건이나 다른 사회체계보다는 형사사법체계에 먼저 접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따라서 형사사법적 제재와 약물치료의 결합이 약물남용과 관련 범죄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다¹⁶⁾. 이러한 의미에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을 유예 받은 마약류사범에게 부과되는 보호관찰 등에 대해서 운영현황을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형을 유예 받은 마약류사범에 대한 개입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개입의 유용성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의 일반적인 절차 및 마약류사범 특성을 고려한 보호관찰 운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마약류사범 중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호관찰 절차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관찰 개시 단계가 있다. 여기서는 신고접수, 초기면담 및 분류, 처우계획 등이 수립된다(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내부자료). 보호관찰소 실무자와의 자문에 의하면, 실무상 보호관찰 초기단계에 신고접수, 심층면접,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대상자를 파악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마약류사범의 경우 초범이 많지만, 암수범죄가 많은 것 같다고 한다(A보호관찰소). 공식적인 범죄경력이 없어서 초범이긴 하지만 약물이 진전, 악화된 상태인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마약류사범에 대해 형을 유예할 경우 개입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보호관찰 실시단계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원호(취업알선, 직업훈련 등)가 이루어진다. 특히 약물사범 지도감독 매뉴얼에 의해서 집중면담도 이루어진다. 이와 더불어 수시로 약물검사가 이루어지고, 외부전문가 연계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내부자료).

16)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c), Principles of Drug Abuse Treatment- A Research-Based Guide(Third Edition): Treating criminal justice-Involved drug abusers and addicted individuals(<https://www.drugabuse.gov/publications/principles-drug-addiction-treatment-research-based-guide-third-edition/drug-addiction-treatment-in-united-states/treating-criminal-justice> 최종방문 2017. 9. 2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이 있는데, 이 중 마약류사범과 관련될 수 있는 것은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않을 것(7호),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금지(8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9호) 등이다. 보호관찰단계에서는 이러한 준수사항이 지켜지는지를 관리감독하게 되는 것이다.

보호관찰소 실무가와의 자문에 의하면, 실무상 마약류사범의 경우 보호관찰소에 매월 1-2번 방문하는 경우가 많지만, 많은 경우 월 4회까지 출석하기도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관찰은 대상자의 전반적인 생활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C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단계에서 현장방문도 중요한데, 이는 마약류사범의 경우 직업이나 주거가 불안정하고, 가족관계도 문제가 있는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대상자의 보고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도방법이다(윤웅장, 2003: 86).

또한 보호관찰 단계에서 필요시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기관에 연계시키기도 한다고 한다. 보호관찰 실무가의 자문에 의하면, 마약류사범의 경우 우울증, ADHD, 불면증 등이 있는 경우가 다수라고 한다. 이런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외부전문가 상담, 연계되어 있는 정신건강지원센터에 의뢰하기도 한다. 이는 강압적인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 연계는 권고, 권유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한다(A보호관찰소).

셋째,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보호관찰기간이 끝나면 종료하게 된다. 만약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경고, 구인, 유치 혹은 선고유예 실효, 집행유예 취소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내부자료).

2. 마약류사범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관찰 등 운영실태

가. 마약류전담 보호관찰제 운영

이상에서 마약류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절차 및 개괄적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에서는 마약류사범과 관련된 특징적인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선 마약류전담 보호관찰제 운영을 들 수 있다. 이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대상자 면담과 현지출장 및 투약검사 등을 통해 마약류사범을 전담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¹⁷⁾, 2016.4.26.). 마약류전담 보호관찰제는 2016년 9월부터 전국 56개 관찰소 중 상당수 마약사범을 지도감독하는 42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마약사범 전담보호관찰관은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를 하고, 재범 위험요인 감소를 위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로 법무부에서는 2016년에 마약사범 재범위험요인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이 도구에 의해 마약류사범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고 있다(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내부자료). 일선 보호관찰소 실무자와의 자문에 의하면 현재 마약류 전담보호관찰관을 위한 교육 및 훈련으로는 사이버 강의(마약류지도감독 매뉴얼 교육), 약물관련 보호관찰 담당자 교육(법무연수원) 등이 있다고 한다(B보호관찰소).

마약류전담 보호관찰제와 관련해서 실무가의 의견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실무상 마약류전담보호관찰관은 마약류사범의 특성을 잘 알고 있고 관련지식이 있어서 처우에 효과적일 수 있다.”(C보호관찰소)

“현재 보호관찰소에서는 지침 상 사범별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가급적 약물 대상자만을 전담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담 직원을 지정하였지만 사정상 100% 온전히 운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마약범죄전담보호관찰제가 필요하다. 마약범죄 담당은 마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대상자의 재범 징후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전문성 또한 필요하다. 약물 검사 등 타 일반 보호관찰 기법과 다른 면도 많고...”(A 보호관찰소)

“마약류전담 보호관찰제의 경우 전문적으로 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되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보호관찰인력부족으로 마약류범죄자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호관찰대상자도 맡게 되어 있다. 또한 지침에 의하면 출장시에는 2인 이상이 가야 되고, 여자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여자직원이 가야 된다. 마약류범죄자의 경우 일반 보호관찰대상자보다 훨씬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므로 현재(1인당 150-200명 담당)보다 인력증원이 필요하다.”(B 보호관찰소)

17) 식품의약품안전처·대검찰청보도자료 “정부, ‘마약류 범죄근절 종합대책’ 발표”(http://www.mfds.go.kr/index.do?mid=675&seq=31439&cmd=v_최종방문 2017. 10. 11).

“마약류사범에 대해서는 매뉴얼도 있고, 실무상 경험을 통하여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 마약류전담보호관찰관의 경우 전문성을 키울 수 있고,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마약류전담보호관찰관의 인력확충이 필요하다. 현재로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현장출장 등을 자주 나가기 어렵고 관리에 있어서도 면담을 자주 하기 어렵다.”(A보호관찰소)

마약류전담보호관찰관에 대한 실무가의 의견을 보면 마약류전담보호관찰제가 실무상 효과적인 운영방식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인력의 부족으로 보다 효과적인 처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임을 알 수 있다.

나. 마약류사범에 대한 약물검사 실시

두 번째 특징으로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약물검사를 실시한다는 점이다. 마약 투약 검사는 재범위험성 정도에 따라 월1회, 분기 1회, 반기 1회 등으로 차등 실시하고, 약물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내부자료). 또한 법무부 본부에서 일선 보호관찰소에 약물검사 대상자 명단을 무작위로 통보하고, 해당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 불시에 약물검사를 실시하기도 한다(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내부자료).

이러한 약물검사에 대해 보호관찰단계에서는 개시신고시에 서면으로 약물검사 동의서를 받고 있다. 또한 대상자에 대해서 약물검사의 목적은 남용사실을 적발하여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용의 유혹에 대처하고 단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한다(윤웅장, 2003: 87).

약물검사에 대해 실무가를 대상으로 운영현황 및 관련 의견을 알아보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실무상 보호관찰대상자의 행위 특성 등을 파악해서 필요시 약물검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대상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집을 자주 옮기는 경우, 입원을 하거나 출국하는 경우, 출석일을 연기하는 경우, 지정출석일에 안 오는 경우, 출석시 감정기복이 심한 경우 등에는 마약류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약물검사를 하고, 정밀검사를 의뢰하기도 한다.”(C보호관찰소)

“집중대상자는 월1회, 주요 I, II 대상자는 분기 1회, 일반대상자는 반기 1회로 약물 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그 이상 약물검사를 하고 있다. 불시에 소환해서 검사하며,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에는 특이상황으로 보고 가서 검사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예고 없이 검사하고 있다.”(C보호관찰소).

“마약류를 판매한 사람의 경우에도 이전에 투약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판매자에 대해서도 약물검사를 하고 있다.”(B보호관찰소).

이러한 내용을 보면 대상자를 관찰해서 필요시 약물검사를 하며, 유통사범에 대해서 공식적인 투약경험으로 처벌받은 것은 아니더라도 투약경험을 고려하여 약물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약물검사가 보호관찰대상자 입장에서 약물사용의 억제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보호관찰대상자 입장에서 약물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약물사용의 억제요인이 될 수 있다.”(A보호관찰소)

“본부에서 무작위로 선정해서 약물검사 대상자를 내려 보내고, 이에 따라 검사를 하기도 한다. 따라서 보호관찰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약물검사를 할 수 있다는 의식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약물사용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B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약물검사는 이처럼 마약류사용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내용도 제시되었다.

“마약류전담 보호관찰관이 면담하면서 소변검사 등을 병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보호관찰소를 대상으로라도 약물검사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C보호관찰소)

“약물검사결과가 나오면 보호관찰소, 경찰, 검찰 간에 공유될 필요가 있다.”(C보호관찰소)

이는 앞에서 제시된 보완사항과 같은 맥락인데, 약물검사 전담직원의 배치는 마약류전담보호관찰관의 인력확충이 이루어질 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외부전문가 연계상담 실시

세 번째 특징으로 약물사범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연계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 중에서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범을 대상으로 전문자격을 갖춘 외부자원과 연계하여 월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외부전문가 연계상담은 대상자별로 월 1-2회, 회기당 1시간, 1년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내부자료).

외부전문가 연계상담에 대해 실무자의 의견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마약류사범의 경우 주변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취약한 상황에 처한 경우들이 있고 이러한 사람에게 상담과 지지를 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마약류사범은 우울증이 있거나 충동조절장애가 있는 경우가 다수이다. 또한 불신이 많아서 주변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 보호관찰소의 경우 마약류사범의 70% 정도가 이혼, 독거상태이다. 또한 스트레스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C 보호관찰소)

“마약류 범죄자 특성을 보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들이 많다. 남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족관계도 좋지 않으며 삶의 낙이 없다고 생각할 때 주변에서 권유나 유혹할 경우 마약류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사용한 이후에는 또 다시 약물을 찾게 되며, 돈을 모아서 약물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 여자의 경우에는 우울한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현장출장을 나가보면, 집에서 누워만 있고, 인간관계를 별로 맺지 못하며, 삶의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B보호관찰소)

이러한 특성을 지닌 보호관찰대상 마약류사범에게 상담과 필요한 조언, 지지를 해 주는 것이 대상자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보호관찰소에서 이루어지는 외부전문가 연계상담의 운영현황을 실무자 자문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보호관찰소에서는 중독학회 소속 전문가를 연계시켜 상담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반응이 긍정적인 편이다. 외부전문가가 마약류사범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일대일로 대상자의 얘기를 들어 주고 필요한 조언을 해 주는 것이 대상자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A보호관찰소)

“2017년 3월부터 외부전문가(중독전문가 협회, 임상심리사, 심리상담사와 연계) 상

담을 실시하고 있다. 외부전문가 연계상담의 경우 동종범죄 3회 이상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고, 이외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수치가 높은 사람들도 상담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상담은 6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를 6개월마다 하고 있는데 연계상담 후에 평가결과가 좋아지고 있다.”(B보호관찰소)

“마약류사범 중 초범은 순응적이지만, 동종전과가 많거나 보호관찰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전에 보호관찰 받던 것에 비해) 출석횟수가 많아지고, 검사도 많아진 것에 대해 불만을 갖기도 한다. 이럴 경우 외부전문가연계상담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이는 외부전문가가 개인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기도 하다.”(B보호관찰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적대시하고 범죄자로 보는데, 외부전문가의 경우 자신을 이해해 주고, 어린 시절 상처 등 약물동기에 대해 다루며 현재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게 한다.심리적 지원을 통해 안도감을 갖게 되고 약물에 대한 저항의식을 키울 수 있다. 외부전문가 연계상담 후 눈에 보이는 태도변화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심리상담이 중요하다고 본다. 약물을 투약하게 만드는 메카니즘을 차단하는 것이다.”(A보호관찰소)

일선 실무자들의 의견을 통해 외부전문가 연계상담에 대해 살펴보면, 마약류범죄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대상자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상담과 조언을 해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립이나 우울감 등을 경험하는 마약류사범에게 심리적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 마약류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소 자체 프로그램 운영

마지막으로 보호관찰소에서 마약류사범의 특성을 고려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부산보호관찰소 실무가에 의하면, 이 보호관찰소에서는 단약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수강명령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산보호관찰소 실무자와의 자문에 의하면, 2017년에는 4-12월까지 매월 1회씩 총 8-9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대상은 초범이면서 모두 여자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상담과 치료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단약프로그램은 마약류사범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보호관찰소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보호관찰대상자를 파악하여 이 중 단약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즉,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고, 상담이나 치료가 병행되는 것이 적절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실시하므로 대상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 형의 유예시 보호관찰 등 부과에 대한 평가

집행유예를 받은 마약류사범에 대해 이루어지는 보호관찰 운영실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보호관찰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면서 대상자의 생활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자의 의견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집행유예처분을 받는 마약류 범죄자에 대해 보호관찰 등이 필요한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 그 이유로 첫째, 형의 유예처분만 받을 경우 처분의 효과가 미약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집행유예는 범죄자의 입장에서 느끼기에 무죄 방면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특히 마약 초범 대상자의 경우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은 집행유예처분만 받게 될 경우 본인의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자신의 범죄행위 후 구속, 재판 등 일련의 고통스런 경험을 통해 단약 의지를 갖기 보다는 범죄 후 처분에 대해 경시하게 되고 이후 재범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A보호관찰소)

둘째, 형의 유예처분을 받는 마약류사범의 경우 초범이나 약물중독이 심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므로 이들에게 보호관찰 등이 필요함이 제시되고 있다.

“마약류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는 대상자는 대개 중독이 그리 심화되지 않은 초범 내지 재범 대상자이다. 이러한 대상자(특히 중독 상태로 접어들기 전이며 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초범대상자)에게 보호관찰관들이 면담을 통해 단약 의지를 고취시키고 구인·유치·집행유예취소 등의 법적 권한으로 재범 의지를 억제시키기도 한다. 또한 불시, 정시 소변검사를 통해 법적 위하력을 대상자들에게 줄 수 있다.”(A보호관찰소)

“보호관찰의 경우에는 2년이 평균이며, 약물검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약물을 할 경우 교도소로 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단약에 효과가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마약류사범 중 집행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C보호관찰소)

셋째, 마약류사범의 특성상 개별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보호관찰이 필요함이 제시되고 있다.

“마약류사범 대상 집단모임을 할 경우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마약류를 접할 수 있다. 따라서 마약류사범의 특성상 개별 프로그램이 더 잘 맞을 수 있다.”(C보호관찰소)

위의 내용을 보면, 형의 유예시 부가적인 처분을 통해 중독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마약류사범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별적 처우인 보호관찰이 우선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보호관찰기간 동안에는 관리감독과 더불어 약물검사가 수반되기 때문에 마약류사용에 대한 억제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앞으로의 개선사항과 관련해서는 약물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바로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것보다 보호관찰대상자 특성에 맞는 중간적 제재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현재 약물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하는데 기각되는 경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보호관찰 실무가의 의견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약물검사시 양성반응이 나오면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하게 되며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보호관찰을 잘 받았다는 점 등이 작용하기도 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므로 그 단계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집중면담 대상으로 관리하는데 수사과정이 길어질 경우 대상자들이 반발하는 경우가 있다.”(B보호관찰소)

“약물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하는데, 95% 이상이 기각되고 있다. 기각될 경우 실무상 부담이 된다. 집중보호관찰대상자가 되어 업무량이 증가하고, 대상자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A보호관찰소)

한편 집행유예처분을 받는 마약류사범에 대해서는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단독으로 부과하기보다는 보호관찰이 병행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는 앞의 선행 연구들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감시가 마약류사범의 재범예방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실무자 입장에서도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

“집행유예처분을 받는 마약류사범에 대해 보호관찰이 아닌 수강명령이 단독부과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위험할 수 있다. 수강명령은 몇 십 시간으로 끝나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동안 관리가 안 되며, 재범위험성이 높은 마약류사범의 경우 재범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수강명령의 경우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40시간으로 단번에 바뀌기는 쉽지 않다. 또한 수강명령만 할 경우 약물검사를 할 수 없다.”(C보호관찰소)

이상의 내용을 보면, 형의 유예처분을 받는 마약류사범의 경우 별도의 부과되는 처분이 없을 때에는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자각이나 심각성 인식이 약할 수 있다는 점, 초기 단계의 약물사범에 대한 조기개입이 필요하다는 점 등으로 마약류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기존 연구나 보호관찰 실무가 의견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를 받는 마약류사범에 대해서는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의 단독부과보다 보호관찰을 우선적으로 부과하고 필요시 수강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형의 유예처분을 받은 마약류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관리방안

전 영 실

형의 유예처분을 받은 마약류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관리방안

마약류사범의 증가추세와 더불어 재범율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처우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특히 마약류사범의 특성 및 이를 고려한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형의 유예시 마약류사범에 대해서 보호관찰 등 사후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연구에서는 우선, 집행유예처분을 받은 마약류사범의 특성 및 보호관찰 부과에 따른 마약류사범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판결문조사를 통하여 보호관찰 부과가 마약류사범의 동종범죄 경력이나 투약횟수, 간격 등에 따라 일관된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적으로 대도시에서 보호관찰이 보다 많이 부과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마약류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운영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약류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은 일반적인 보호관찰 운영과 더불어 마약류전담보호관찰제 운영과 약물검사, 외부전문가 연계상담 등 마약류사범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관찰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형의 유예처분시에 마약류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 등 효과적인 사후관리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절 형의 유예처분시 보호관찰 확대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앞서도 보았듯이 공식통계에 의하면 집행유예처분은 2년 반 안팎의 기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의 판결문조사에서도 집행유예 기간이 24개월 이상인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보호관찰이 부과되는 집단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보다 길었지만,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는 집단의 경우도 집행유예 기간이 24개월 이상인 비율

이 90%대를 보였다. 이러한 집행유예 기간 동안 마약류사범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현재 형법과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는 형의 유예처분시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집행유예처분을 받은 마약류사범(특히 투약사범) 중 보호관찰이 부과된 비율은 60.6%였으며, 마약류사범의 특성이나 행위특성에 따라 보호관찰 부과여부가 뚜렷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형의 유예시 마약류사범에게 보호관찰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형의 유예처분을 받는 경우 부과되는 보호관찰은 앞서의 논의처럼 지도감독 등의 개입을 통하여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재사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약류사범의 재범예방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마약류사범에 대한 약물사용이 모니터링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약물사용자에 대한 처우에서는 처우기간 동안 약물사용이 모니터링되어야 한다고 논의되고 있다.¹⁸⁾ 다음으로 약물범죄자의 재범에는 약물관련 특성뿐만 아니라 범죄경력, 주변 환경, 경제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관련된다고 볼 때 보호관찰을 통한 생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입 역시 필요할 것이다. 특히 범죄경력은 약물범죄의 재범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은경, 2006; Larney and Martire, 2010; Evans et al., 2011; Devall et al., 2017). 이는 마약류사범 중에서도 범죄경력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호관찰의 경우 마약류사범에 대해 형사사법기관내에서의 모니터링을 제공하며, 약물검사를 수반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사범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 연계상담 등 부가적인 프로그램을 제공, 필요시 관련기관 연계나 치료 권유 등을 하고 있다. 마약류사범 입장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재범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기 어려울 것이며,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형의 유예시 보호관찰 부과를 통하여 모니터링 및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형의 유예처분을 받는 마약류사범의 경우 동종재범이 없는 비율이 많은 편이다. 물론 마약류범죄의 특성상 암수범죄가 많다는 한계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초기

18)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a), Principles of Drug Abuse Treatment for Criminal Justice Populations-A Research-Based Guide: Principles, <https://www.drugabuse.gov/publications/principles-drug-abuse-treatment-criminal-justice-populations/principles>, 최종 방문 2017. 9. 22.

단계에 있는 마약류사범에 대해 조기개입을 하는 것이 더 심각한 약물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집행유예처분을 받는 마약류사범 중 투약을 한 경우는 80%대 증반을 차지해서 투약 비율이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 투약사범 중 보호관찰 부과여부에 따라 동종범죄 경력 유무를 보면, 보호관찰이 부과되는 경우 동종범죄경력이 있는 비율이 더 높긴 하지만,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동종범죄 경력이 있는 비율이 20%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관찰 부과 여부에 관계없이 투약을 1회만 한 경우보다 2회 이상 한 경우가 많았다. 물론 보호관찰이 부과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2회 이상 투약을 한 비율이 더 많긴 하지만,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은 집단에서도 1회 투약보다는 2회 이상 투약한 경우가 많았으며 후자의 경우에 5회 이상 투약한 경우도 17% 정도를 보였다.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는 마약류사범의 동종범죄 경력이나 투약횟수 등을 고려한다면 형의 유예처분만 하는 것보다 보호관찰 등의 부가처분을 통한 조기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집행유예처분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형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집행유예시에는 보호관찰 이외에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단독으로도 부과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를 보면,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은 집단에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경우는 각각 14.6%, 10.6%였다.

수강명령의 경우 약물관련 교육을 통하여 약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식 습득 등을 돕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인영, 2014: 86). 법무부 수강명령 등 집행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주된 집행 분야로 약물, 알코올 치료 강의(약물 등 오·남용에 대한 이해 증진 등)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수강명령이 특히 유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마약류사범에 대한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자존감향상, 우울감 감소, 단약 자기효능감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결과도 있다(이법호, 2011). 실무가와의 자문에서도 수강을 통해서 마약류남용의 신체적 폐해 등에 알려줄 수 있고, 사회봉사를 통하여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다고 한다. 마약류남용자 중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남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봉사를 통하여 깨닫는 면이 있다고 한다(C보호관찰소).

또 한편으로는 사회봉사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한다(A보호관찰소).

이렇듯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수강명령을 하는 이유가 재범예방에 있다면 수강명령 이외에 보호관찰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이 수반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한영수, 2007: 18).

마약류사범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보통 2년 반 정도라고 볼 때(대검찰청, 2017: 199),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만을 부과할 경우 집행유예기간 동안의 관리감독이나 지원이 불가능하다. 특히 수강명령의 경우 교육을 통한 의식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때 수강명령을 통하여 나타난 긍정적 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돕고, 마약류사범의 단약의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이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이 행위유형에 관계없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투약사범의 특성을 살펴보고, 투약사범을 중심으로 보호관찰이 부과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특성 및 범죄관련 특성을 살펴보았다. 물론 집행유예처분을 받는 마약류사범의 대다수는 투약사범이지만, 유통사범에 대해서도 보호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부과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투약사범의 경우 유통사범에 비해 보호관찰이 부과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마약류 유통사범의 경우 마약류 사용을 한 경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또한 마약류 유통사범이 남용자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편 매수나 소지만 한 경우에도 궁극적으로 사용을 목적으로 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약물사용단계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렇게 본다면 매수나 소지의 경우에도 형을 유예할 경우 일정 기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제2절 형의 유예시 부과되는 보호관찰 등의 개선방안

앞에서 형의 유예시 보호관찰 등 부과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형의 유예처분을 받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등 부가처분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약류 종류나 행위유형을 고려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호주의 연구에서는 대마 이외(메스암페타민이나 코카인 등)의 약물이 재범과 관련되기도 하였고(Larney and Martire, 2010), 메스암페타민 판매가 재범과 관련되는 연구결과도 있었다(Brecht and Herbeck, 2014). 우리나라 공식통계에서도 최근 3년간 향정사범의 재범율은 40%대로 다른 종류의 마약류사범에 비해 높은 편이다(대검찰청, 2017: 204). 이 연구의 판결문조사를 보면, 대마보다 향정사범에 대해 보호관찰이 더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정사범과 대마사범의 경우 마약류 사용 동기나 사용자 특성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투약을 하는 사람 중에 투약과 매매를 같이 하는지의 여부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매를 하는 경우 마약류 종류, 주변 사람과의 네트워크가 약물 사용과 밀접하게 관련되는지의 여부 등도 사후관리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장출장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성인과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보호관찰소에 출석해서 이루어지는 면담보다는 대상자가 있는 현장에 방문해서 이루어지는 면담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관찰 4개월부터 1년 사이에 현장출장 면담횟수가 적을수록 재범율이 높게 나타났다(이백철, 2012). 이러한 연구는 특히 이 기간에 현장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마약류사범의 경우 주변 마약류 사용자 등과의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의욕을 갖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거주지 방문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있는지 보다 자세히 파악하고, 필요한 관리나 지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약물검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호관찰기간 중의 약물검사는 마약류 사용자를 적발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검사로 인해 마약류 사용을 억제하게 될 수 있다. 현재 정기적으로 약물검사를 실시하기도 하지만 법무부 본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대상자에 대해 일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참고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특정 날짜에 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매일 무작위적으로 일정 대상자를 검사하는 것이 책임감을 증가시키고, 약물 양성반응을 감소시

킬 수 있다고 제시되고 있다(Shannon et al., 2015: 59-60). 이러한 약물검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마약류사범이 많은 보호관찰소를 대상으로 약물검사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메스암페타민 이외의 다양한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정밀검사를 의뢰해야 하는데, 보호관찰소 자체적으로 여러 종류의 약물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마약류사범을 전담하는 마약류전담 보호관찰관의 인력확충 및 전문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앞서도 보았듯이 마약류사범에 대한 처우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 중 하나는 담당직원의 전문화이다.¹⁹⁾ 마약류사범의 경우 재범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현장출장 및 지도감독이 중요하며, 보호관찰 기간 동안 개별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약류전담 보호관찰관의 경우 교육과 더불어 현장에서의 실무경험을 통해 마약류사범의 특성을 이해하고, 보호관찰대상자의 변화나 재범 징후 등을 보다 잘 파악해 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마약류 전담보호관찰제의 유용성을 고려한다면 마약류전담 보호관찰관의 인력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호관찰소 실무자 자문에 의하면, 현재 마약류전담 보호관찰관은 마약류사범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호관찰대상자도 맡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선 보호관찰소 실무자와의 자문에 의하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현장출장 등을 자주 나가기 어렵고 관리에 있어서도 면담을 자주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마약류사범 전담 보호관찰관의 인력확충을 통하여 보다 전문적인 처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수강명령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면, 우선 마약류사범의 약물종류 등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류사범 대상 수강명령은 마약류 종류별 또는 위험성 수준을 고려한 표준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이현, 2013: 59). 그러나 마약류사범의 경우 다양한 마약류를 접하기도 하지만 특정 마약류를 중심으로 범죄행위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공식통계에 의하면 마약류사범의 재범 중 동종 마약류 재범이 주를 이루고 있다.²⁰⁾ 이러한 점들을

19) American Probation and Parole Association, Substance Abuse Treatment, https://www.appa-net.org/eweb/Dynamicpage.aspx?site=APPA_2&webcode=IB_PositionStatement&wps_key=7fc2f2f7-f752-4c3e-adb8-64b4b49dfa58. 최종방문 2017. 9. 21.

고려한다면 소규모 수강명령 프로그램에서 동종 마약류사범을 중심으로 약물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초범 혹은 여성 등 마약류사범 특성별로 소규모의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수강명령 프로그램에서 약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감시가능성보다 대상자 스스로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자각함으로써 마약류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수강명령을 받는 약물남용자들을 대상(107명)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약물남용자는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특히 약물에 대한 법적 지식이나 약물이 심리에 미치는 영향 보다는 약물사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진경, 2000: 13-14).

이 외에 소집단 수강명령을 통하여 마약류사범간의 정보교환 등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마약류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마약류사범에 대한 소집단 수강명령에서는 개별 대상자 및 대상자 간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파악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에 있어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앞의 마약류사범에 대한 처우논의에서 처우 요소 중 하나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를 제시하였다. 수강명령의 경우에도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필요에 대해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논의된다(이현, 2013: 69). 마약류사범의 경우 서비스를 많이 제공받을수록 재범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살펴보았다(Evans. et al., 2011).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보호관찰에서 대상자의 필요를 다루기 위해서는 가용한 지역사회 자원을 파악하고 필요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마약류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부전문가 연계상담도 이러한 맥락에서 유용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보호관찰기간 중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보호관찰 종료후의 지원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약물을 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20) 2016년의 경우를 보면 전체 마약류사범 재범자 중 동종 마약류 재범자가 78.8%에 달하고 있다 (대검찰청, 2017: 205).

이외에 다양한 중간적 제재방안이 필요하다²¹⁾.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호관찰소 실무자 자문에 의하면, 약물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하는데, 95% 이상이 기각되고 있다고 한다. 기각될 경우 실무상 부담이 되는데, 집중보호관찰 대상자가 되어 업무량이 증가하고, 대상자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A보호관찰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 약물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바로 집행유예를 취소하기보다는 그 횟수나 이후 태도와 행동변화(예를 들면 약물관련 사람과의 교류단절, 약물을 끊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 등)를 고려하여 다양한 중간적 제재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21)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도 집행유예취소기준을 구체화하고 준수사항 위반정도에 따르는 제재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다(김혜경, 2011: 202).

참고문헌

- 김남희·서정민, “마약류사범의 약물중독, 알코올의존, 정신질환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 40권 제4호,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175-204, 2012.
- 김용석·장정연, “보호관찰 여성의 약물남용 재발예방을 위한 집단개입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 57권 제 2호, 한국사회복지학회, 321-350, 2005.
- 김은경, “한국 마약류 사용사범 특성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 65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01-338, 2006.
- 김재희, “독립된 제재수단으로 사회봉사명령 활용의 제고방안.”, 홍익법학 제 12권 제 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429-451, 2011.
- 김혜경,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 보호관찰 제 11권 제 2호, 한국보호관찰학회, 179-215, 2011.
- 김혜정, “법적 성질의 재고찰을 통한 보호관찰의 형사정책적 지위정립-보호관찰과 보안처분의 개념구별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 13권 제 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11-132, 2001.
- 대검찰청, 2014 마약류 범죄백서, 2015.
- 대검찰청, 2016 마약류 범죄백서, 2017.
- 박상진, “개정 형법상의 선고유예·집행유예시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봉사명령의 법적 성격.”, 중앙법학 제 2호, 중앙법학회, 381-394, 2000.
- 박성수,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요인에 관한 연구-위험성·육구 요인 도출을 통한 효과적 사회처우 방안모색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제 7권 제 2호, 한국치안행정학회, 211-232, 2010.
- 박성수·김우준, “마약류 수용자의 처우 프로그램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 10권 제 4호, 한국콘텐츠학회, 348-358, 2010.
- 손외철, “사회봉사, 수강명령에서의 회복적 사법 적용방안.”,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 16권 제 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87-109, 2011.
- 식품의약품안전처·대검찰청 보도자료 “정부, ‘마약류 범죄근절 종합대책’ 발표” (http://www.mfds.go.kr/index.do?mid=675&seq=31439&cmd=v_최종방문)

2017. 10. 11).

- 신현주·박성수, “대학생의 약물남용 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 55권, 한국경찰학회, 183-206, 2015.
- 윤민우, “부정적인 자아감, 자기 효능감이 마약 사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연구 제 11권 제 1호, 한국경찰연구학회, 3-26, 2012.
- 윤용장, “약물사범 보호관찰대상자의 효율적 지도방안.”, 보호관찰 제3권, 한국보호관찰학회, 73-96, 2003.
- 이백철, “보호관찰 지도감독 효율화 방안 연구- 출석면담과 현장출장면담과의 재범여부 비교분석연구.”, 교정담론 제 6권 제 2호, 아시아교정포럼, 113-152, 2012.
- 이법호, “약물사범 수강명령의 효과성과 개선방안.”,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 1권 제 1호, 한국중독범죄학회, 65-87, 2011.
- 이인영, “마약류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에 관한 일고찰.”, 비교형사법연구 제 16권 제 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71-196, 2014.
- 이현, “제 3 주제: 마약류사범 수강명령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중독범죄학회 학술대회, 한국중독범죄학회, 58-74, 2013.
- 장진경, “성인 약물남용자의 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육요구도 분석-성인 수강명령 약물사범을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제 38권 제 6호, 대한가정학회, 81-100, 2000.
- 전영실·김슬기·배상균·주현경, 신종마약류범죄 발생실태와 통제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발간예정).
- 한부식·황인옥, “약물중독자의 회복 및 사회복귀에 관한 사례연구.”,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 10권 제 1호,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91-116, 2017.
- 한영수, “사회내제재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 71권 제 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41-466, 2007.
- American Probation and Parole Association, Substance Abuse Treatment, (https://www.appa-net.org/eweb/Dynamicpage.aspx?site=APPA_2&webcode=IB_PositionStatement&wps_key=7fc2f2f7-f752-4c3e-adb8-64b4b49dfa58). 최종방문 2017. 9. 21).
- Akers, L. R., Sellers, S. C., & Jennings, G. W., 민수홍·박강우·기광도·전영실·최병각·김혜경 역, 범죄학 이론, 나남, 2017.

- Banks, D., & Gottfredson, D. C., "The effects of drug treatment and supervision on time to rearrest among drug treatment court participants." *Journal of Drug Issues*, 33(2), 385-412, 2003.
- Brecht, M. L., & Herbeck, D., "Time to relapse following treatment for methamphetamine use: a long-term perspective on patterns and predictors." *Drug and alcohol dependence*, 139, 18-25, 2014.
- Caudy, M. S., Tang, L., Wooditch, A., & Taxman, F. S., "Short-term trajectories of substance use in a sample of drug-involved probationers."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46(2), 202-213, 2014.
- DeVall, K. E., Gregory, P. D., & Hartmann, D. J., "Extending recidivism monitoring for drug courts: methods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61(1), 80-99, 2017.
- De Wree, E., Pauwels, L., Colman, C., & De Ruyver, B., "Alternative sanctions for drug users: fruitless efforts or miracle solution?" *Crime, law and social change*, 52(5), 513-525, 2009.
- Evans, E., Huang, D., & Hser, Y. I., "High-risk offenders participating in court-supervised substance abuse treatment: Characteristics, treatment received, and factors associated with recidivism." *The journal of behavioral health services & research*, 38(4), 510-525, 2011.
- Gonzalez, J. M. R., Walters, S. T., Lerch, J., & Taxman, F. S., "The relationship between drug use, drug-related arrests, and chronic pain among adults on probation."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53, 33-38, 2015.
- Harvey, E., Shakeshaft, A., Hetherington, K., Sannibale, C., & Mattick, P. R., "The efficacy of diversion and aftercare strategies for adult drug-involved offenders: a summary and methodological review of the outcome literature." *Drug and Alcohol Review*, 26(4), 379-387, 2007.
- Hutto, J., Baronia, R., Larumbe, E., Bobba, S., Ajufo, I., Arredondo, R., & Manning, S., "A Study of Substance Use in Women in the West Texas US Probation and Pretrial Services System."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34(2), 170-180, 2016.
- Hyatt, J. M., & Barnes, G. C., "An experimental evaluation of the impact of

- intensive supervision on the recidivism of high-risk probationers.” *Crime & Delinquency*, 63(1), 3-38, 2017.
- Larney, S., & Martire, K. A., “Factors affecting criminal recidivism among participants in the Magistrates Early Referral into Treatment (MERIT) program in New South Wales, Australia.” *Drug and alcohol review*, 29(6), 684-688, 2010.
- Listwan, S. J., Shaffer, D. K., & Hartman, J. L., “Combating methamphetamine use in the community: The efficacy of the drug court model.” *Crime & Delinquency*, 55(4), 627-644, 2009.
-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a), Principles of Drug Abuse Treatment for Criminal Justice Populations - A Research-Based Guide: Principles, (<https://www.drugabuse.gov/publications/principles-drug-abuse-treatment-criminal-justice-populations/principles>, 최종방문 2017. 9. 22).
-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b), Principles of Drug Abuse Treatment for Criminal Justice Populations - A Research-Based Guide: Are relapse risk factors different in offender populations? How should drug abuse treatment deal with these risk factors?, (<https://www.drugabuse.gov/publications/principles-drug-abuse-treatment-criminal-justice-populations/are-relapse-risk-factors-different-in-offender-popu>, 최종방문 2017. 9. 22)
-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c), Principles of Drug Abuse Treatment- A Research-Based Guide(Third Edition): Treating criminal justice-Involved drug abusers and addicted individuals(<https://www.drugabuse.gov/publications/principles-drug-addiction-treatment-research-based-guide-third-edition/drug-addiction-treatment-in-united-states/treating-criminal-justice>_최종방문 2017. 9. 21)
- Owens, M. D., & McCrady, B. S., “The role of the social environment in alcohol or drug relapse of probationers recently released from jail.” *Addictive disorders & their treatment*, 13(4), 179-189, 2014.
- Shannon, L. M., Hulbig, S. K., Birdwhistell, S., Newell, J., & Neal, C., “Implementation of an enhanced probation program: Evaluating process and preliminary outcomes.”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49, 50-62, 2015.

Abstract

Effective Treatment for Drug Offenders on Probation

Jeon, Young-sil·Kim, Ji-young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conditions of managing drug offenders on probation after the court decided suspension of execution of sentence. Then it presented suggestions for effective and efficient management of those offenders based on its findings. As a first step of understanding the current situations we first reviewed the total number of 1865 court judgment, delivered in 2016 alone, on drug offenders who were sentenced to imprisonment but execution of the sentence was suspended.

After reviewing court judgment we could draw certain characteristics of drug abusers and offenders of drug related crimes (here in after referred to drug offenders)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age of drug abusers was relatively lower than that of offenders of drug related crimes, for example, convicted for drug possession or sales. Drug abusers had a higher proportion of self-employed than drug offenders. Compared to drug offenders, drug abusers showed higher propensity of smoking marijuana, purchasing drugs, and committing the crime with others, while the rate of concurrent with other types of crimes was lower. Taking into account high addiction potential, large number of drug abusers had criminal records of committing the same crime and placed on probation or attendance order. However, smaller number of drug abusers appointed lawyers than drug offenders. Sixty percent of drug abusers subject to examination was sentenced to probation. 90% of drug abusers sentenced to probation was Koreans, while 67% of drug abusers not sentenced to probation was Koreans. The difference could be explained with procedures after court judgment. Most foreigners with drug crime shall be deported, for this reason, it is meaningless to place them on probation. Compared to drug abusers without probation, the average age of those with probation was older and the proportion

of self-employed or service industrial employees was slightly higher. Large number of drug abusers lived in major cities like Busan or Incheon. Among the total number of drug abusers, most of them were involved in smoking marijuana while more abuser of psychotropic drugs were sentenced to probation than other types of drug abusers like marijuana. One of characteristics of psychotropic drug abusers was that they took the drug alone. In other words, most abusers of psychotropic had no accomplices. More than half of drug abusers sentenced to probation got drugs from illegal drug traders, the dosage they took was lower than those without probation while the frequency of taking drug use was higher. It could assume that probation order might be appropriated since drug abusers sentenced to probation had criminal record for the same offense than those without probation.

Procedures and management method of probation on drug offense were not quite departed from those for conventional crime offenders. However, there is a special programs for drug abusers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illegal drug related crimes such as providing designated probation service for drug abusers, drug testing, and consultation with external experts.

Based on the analysis of court judgment and the practical conditions of probation, this study presented suggestions to improve effectiveness of post management measure. Post management should be strengthened by expanding probation for drug offenders further when suspension of execution of sentence was delivered by the court as probation could be useful to prevent this type of crime as well as recidivism. In addition, probation program for drug abusers would be helpful to prevent more serious drug offenses by conducting drug test on a regularly basis and monitoring their everyday life. Suggestions to improve the current probation system as follows. ; first, providing distinct post management by classifying types of drugs the offenders took or criminal behaviors; second, conducting random check more frequently; third, increasing the number of probation officers designated for drug offenses; strengthened linkage with community resources; developing and implementing attendance order program based on types of drugs and characteristic of drug offenders.

부록

판결문조사표

ID

--	--	--	--

I. 개관

1. 사건번호

_____년 _____

2. 죄명(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1) 마약 2) 향정 3) 대마

3. 이종경합범죄 유무 1) 없음 2) 있음(죄명: _____)

4. 최종 판결법원

1) 지방법원 2) 고등법원 3) 대법원

4-1. 판결이 이루어진 지방법원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수원 9) 의정부
10) 춘천 11) 청주 12) 전주 13) 창원 14) 제주

5. 성별 1) 남자 2) 여자

6. 생년월일 _____년 ___월

7. 국적 1) 대한민국 2) 외국(국가명:)

8. 사건당시 직업

- 1) 농업, 수산업, 축산업 2) 자영업 3) 판매/서비스직
- 4) 기능공, 숙련공 5) 일반작업직 6) 사무직, 기술직
- 7) 경영관리직 8) 전문직 9) 가정주부
- 10) 학생 11) 무직 12) 유흥업소 종사자
- 13) 기타()

9. 형량

9-1. 징역____개월 집행유예 ____개월

9-2. 부가처분

- 1) 보호관찰(____개월) 2) 수강명령(____시간) 3) 사회봉사명령(____시간)
- 4) 추징금(____원) 5) 기타() 6) 없음()

11. 범죄유형(복수응답)

1) 투약 2) 매수 3) 매도 4) 소지 5) 기타(구체적으로:)

12. 변호사 선임여부

1) 선임함 (☞ 12-1로 가시오) 2) 선임하지 않음

12-1. 선임한 변호사의 유형

1) 민선변호사 2) 국선변호사

II. 범죄 특성

1. 마약류 종류(복수응답)

1) 대마 2) 메스암페타민 3) 신종마약류(종류:) 4) 기타()

1-1. 복수응답인 경우 가장 주된 마약류를 적으시오

1번의 번호 기입_____

2. 공범유무 1) 없음 2) 있음(명: 2-1로 가시오)

2-1. 공범자들간의 관계

- 1) 친구, 선후배 2) 직장동료 3) 가족, 친척 4) 이웃
5) 안면만 있는 사이 6) 모르는 사이 7) 기타()

3. 마약류였는지에 대한 자각여부(모르고 했다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2번으로)

- 1) 모르고 있었음 2) 알고 있었음

4. 약물의 유해성에 대한 자각여부(모르고 했다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2번으로)

- 1) 모르고 있었음 2) 알고 있었음

5. 마약류 획득경로

- 1) 인터넷 등을 통해 2) 유흥업소를 통해 3) 불법 약물거래업자를 통해
4) 친구, 선후배를 통해서 5) 직장 등 관련 사람을 통해 6) 해외에서
7) 스스로 제조 8) 기타() 9) 알 수 없음()

6. 유통된 마약류 명칭

- 1) 기존 불법 물질 이름으로 유통 2) 합법적인 이름으로 가장한 상태에서의 유통
3) 기타() 4) 알 수 없음()

Ⅲ. 검거 및 처리 특성

1. 검거당시 선고유예 증인지의 여부(**선고유예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3)번에 체크하시오**)
 - 1) 선고유예 중 2) 보호관찰부 선고유예 중 3) 선고유예 중이 아님
2. 검거당시 가석방 증인지의 여부(**가석박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2)번에 체크하시오**)
 - 1) 가석방 중 2) 가석방 중이 아님
3. 범죄반성정도 1) 반성하지 않음 2) 반성함 3) 알 수 없음
4. 자수여부(**명시되지 않으면 2) 자수 안함으로 체크하시오**)
 - 1) 자수 2) 자수 안함

Ⅳ. 범죄자 특성

1. 조직범죄 구성원의 여부(**명시되지 않으면 2) 조직범죄구성원 아님 으로 하시오**)
 - 1) 조직범죄구성원 2) 조직범죄구성원 아님
2. 거주지
 - 1) 서울 2) 부산 3) 인천 4) 수원 5) 대전 6) 광주 7) 대구
 - 8) 경기 9) 충북 10) 충남 11) 경북 12) 경남 13) 전북 14) 전남
 - 15) 제주 16) 기타()
3. 거주지역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농어촌 등

4. 범죄경력 유무(복수응답)(범죄경력이 있다고 명시되지 않으면 1) 없음
으로)

- 1) 없음 2) 동종(회) 3) 이종(회)

5. 동종경력유무(동종경력이 있다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 2) 동종경력
없음에 체크하시오)

- 1) 동종경력 있음(9-1로 가시오) 2) 동종경력 없음

5-1. 동종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이전 처분

- 1) 집행유예 2) 벌금 3) 실형 4) 기타 5) 알 수 없음()

연구총서 17-AB-04

마약류사범 보호관찰 확대 등 사후관리 방안 연구

발 행 | 2017년 11월

발 행 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 행 인 | 김진환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 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re.kr

정 가 | 7,000원

인 쇄 | (사) 한국장애인문화콘텐츠협회 (02)2279-6760

I S B N | 979-11-87160-76-2 93330

•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함.

마약류사범 보호관찰 확대 등 사후관리 방안 연구

Effective Treatment for Drug Offenders on Probation